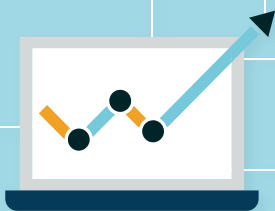


2024 한권으로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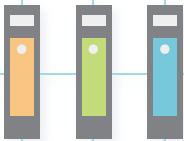
# 주식과 세금





2024 한권으로 OK

# 주식과 세금



---

## 머리말

지난해 말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일반 국민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 관련 세금문제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은 시중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식과 세금」 책자를 처음으로 제작·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간하는 ‘주식과 세금’ 책자는 주식거래의 기초상식과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처분시까지 단계별 세금문제를 총 76개의 문답형식으로 구성하는 한편,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독성을 제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절세 꿀팁 및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추가하여 활용성도 강화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책자가 주식등 관련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 5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일러두기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서술한 것으로 모든 법령규정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령이 개정되거나 법령의 해석이 변경되어 본 책자의 내용과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과 해석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발간일 현재 개정된 법령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시행이 유예된 법령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책자에 표기된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세율이며, 법령의 표기방식은 일부 아래와 같이 간소화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법령명	표기 방식
국세기본법	국기법
소득세법	소득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증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증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상증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본 자료는 주식을 거래할 때 과세되는 세금에 대하여 납세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사항 위주로 수록하였으며, 개별사안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1장**

**주식등 과세이해를 위한 기초지식**

1.	주식의 개념과 종류가 궁금해요	3
2.	주식시장에 대해 알고 싶어요	5
3.	상장이란 무엇인가요?	8
4.	주식거래 절차도 알고 싶어요	10
5.	상장주식 매매거래의 종류 및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2
6.	주식 매매계약은 어떻게 체결되나요?	14
7.	단일가매매와 접속매매의 적용시간에 대해 알고 싶어요	19
8.	기타 매매계약체결방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22
9.	상장주식 거래 후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26
10.	주식과 유사한 금융투자상품도 많던데... 금융투자상품이란 무엇인가요?	28
11.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29

**제2장**

**주식등 양도소득의 이해**

<b>제1절</b>	<b>주식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b>	<b>37</b>
12.	주식등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를 알고 싶어요	37
<b>제2절</b>	<b>주식등 양도소득 과세대상</b>	<b>38</b>
13.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38
1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39
15.	양도란 무엇인가요?	42

<b>제3절</b>	<b>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b>	<b>43</b>
16.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궁금해요	43
1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중 최대주주 판정 시 보유지분을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44
18.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46
19.	상장주식을 연도 말에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나요?	48
20.	법인이 연도 중 신설되었거나 합병·분할한 경우 대주주 요건 판정기준일은 언제가 되나요?	49
21.	기타 대주주 판정 시 유의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50
22.	'23년 말에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 되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51
23.	비상장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대주주만 해당되나요?	52
<b>제4절</b>	<b>국외주식 양도소득세</b>	<b>54</b>
24.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54
25.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55
26.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국내주식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56
27.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요?	57

<b>제5절</b>	<b>주식등의 양도·취득시기</b> .....	<b>58</b>
<b>28.</b>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	58
<b>제6절</b>	<b>주식등 양도소득세 계산</b> .....	<b>60</b>
<b>29.</b>	주식등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60
<b>30.</b>	수차례에 걸쳐 다른 가액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63
<b>31.</b>	주식등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본공제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	64
<b>32.</b>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받는 건가요? .....	65
<b>33.</b>	여러 주식종목을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종목과 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혼재된 경우 이를 통산할 수 있나요? .....	67
<b>34.</b>	금년에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내년으로 이월 하여 내년도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나요? .....	68
<b>35.</b>	국내주식은 이익이 발생했는데 미국주식은 손실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미국주식의 손실을 통산할 수 있나요? .....	69
<b>제7절</b>	<b>주식등 양도소득세 계산</b> .....	<b>70</b>
<b>36.</b>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70
<b>37.</b>	홈택스 등을 이용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	71
<b>&lt;핵심&gt;</b>	<b>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b> .....	<b>72</b>

## 제3장 주식등 거래 관련 기타 세금

<b>제1절</b>	<b>주식등 거래 관련 증권거래세 등</b>	<b>77</b>
38.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외에 다른 세금도 납부해야 하나요?	77
39.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나요?	78
40.	국외 진출할 때 내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있다고 하던데?	79
<b>제2절</b>	<b>주식등 증여 관련 증여세</b>	<b>83</b>
41.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상장주식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83
42.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경우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85
43.	주식등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86
44.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89
45.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에 대해 알고 싶어요	90

## 제4장 파생상품 양도소득의 이해

46.	파생상품이란 무엇인가요?	97
4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은 무엇이 있나요?	100
48.	파생상품의 양도·취득시기 및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101
49.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별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102
50.	파생상품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112
51.	주식워런트증권(ELW)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지분증권인 주식등의 양도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113
5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율은 주식과 다른가요?	114
53.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115



## 제5장 배당소득의 이해

- 54. 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 119
- 55. 종합소득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 120
- 56.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요? ..... 123
- 57. 배당소득세가 궁금해요? ..... 125
- 58. 비과세, 감면 등 과세되지 않는 배당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 128
- 59. 배당소득이 발생한 날은 언제가 되는 건가요? ..... 130
- 60. 배당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131
- 61. 상장주식 보유 시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나요? ..... 133
- 62.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종합과세 방법은? ..... 136
- 63.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137
- 64.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140
- 65. 배당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의 공제방법을 알려주세요 ..... 141

## 제6장 주식의 평가

- 66. 주식평가는 왜 하는 건가요? ..... 145
- 67. 평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 146
- 68. 주식 평가방법을 알려주세요 ..... 149
- 69. 주식평가 시 시가란 무엇인가요? ..... 153
- 70. 시가가 없는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 155

7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 156

72.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 159

73.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 163

74. 특수한 경우의 주식평가 방법도 알려주세요 ..... 165

## 제7장 **주식 관련 조세특례**

7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뭔가요? ..... 169

76.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세금혜택은 없나요? ..... 174

## 제8장 **절세 꿀팁 모음**

1.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 177

**꿀팁1.** 손실 활용(실현)하기 ..... 177

**꿀팁2.**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 178

**꿀팁3.**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하기 ..... 179

2. **주식 증여세 절세** ..... 180

**꿀팁4.** '상장주식 증여' vs '주식취득자금 증여' ..... 180

**꿀팁5.**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를 고려하세요 ..... 180

**꿀팁6.** 비상장주식 거래 시 유의사항 ..... 181

3. **기타 절세** ..... 181

**꿀팁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하기 .....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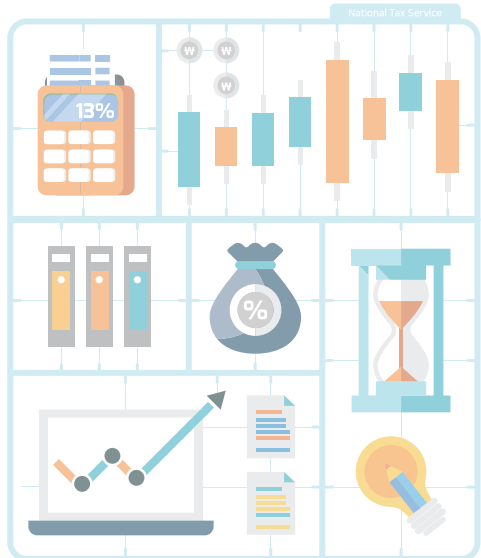
제9장

자주 실수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사례

<b>1. 세율 적용</b> .....	<b>185</b>
<b>사례1.</b>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185
<b>사례2.</b>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186
<b>사례3.</b>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사례 .....	187
<b>사례4.</b>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5%)을 적용하여야 하나 세율 적용을 잘못된 사례 .....	188
<b>사례5.</b> 특정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 미적용 사례 .....	189
<b>사례6.</b> 신주인수권 단기 양도 후 단기 양도세율(30%) 미적용 사례 .....	190
<b>2. 대주주 판단</b> .....	<b>191</b>
<b>사례7.</b> 이혼한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사례 .....	191
<b>사례8.</b>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새로 매수한 주식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	192
<b>사례9.</b>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하여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	193
<b>3. 손익 통산</b> .....	<b>194</b>
<b>사례10.</b>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	194
<b>사례11.</b> 예정신고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한 사례 .....	195
<b>사례12.</b> 손익통산 순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 .....	196

목차

4. 기본 공제	197
<b>사례13.</b> 기본공제를 매 예정신고마다 중복 적용한 사례	197
5. 기타	198
<b>사례14.</b> 상장주식 장외 거래분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198



National Tax Service





# 제1장 주식등 과세이해를 위한 기초지식<sup>1)</sup>

1) 제1장의 내용은 한국거래소 발간 '알고싶어요 주식시장' 및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http://www.krx.co.kr))에 게재된 내용 등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01 | 주식의 개념과 종류가 궁금해요



주식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확장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자에게 자금을 보탠 대가로 발행해 주는 증서로서 주식 회사의 소유지분을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주식은 주권(증서)에 액면가액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기명·날인 유무, 재산적 내용, 의결권 유무, 상장 여부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됩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주식의 개념

주식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확장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자에게 자금을 보탠 대가로 발행해 주는 증서로서 주식회사의 소유지분을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주식은 작은 금액의 단위(1주당 100원 이상)로 발행되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사정에 맞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주식회사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그것을 원천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죠.

주식을 소유한 사람을 주주라고 하고, 주주는 회사의 자본금 중 자신이 출자한 금액 만큼 회사의 주인이 되며,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회사 측면에서는 주주가 출자한 자금만큼 자기자본이 형성되고 만기의 개념이 없어 주식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되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차입이나 채권발행에 비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주주는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소유자로서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주주는 자본의 출자의무를 지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자가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주식의 개념**



**나. 주식의 종류**

주식은 주권(증서)에 액면가액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기명·날인 유무, 재산적 내용, 의결권 유무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종류	내용
우선권 여부	보통주 (Common Stock)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어떠한 제한이나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는 일반적인 주식
	우선주 (Preference Shares)	보통주에 비해 재산권적 내용(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 대개의 경우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음
	상환우선주(RPS)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이 부여된 우선주
	전환우선주(CPS)	다른 종류의 주식(통상 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RCPS)	상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우선주
발행 시기	구주	회계연도 개시일에 발행되어 있는 주식. 회계연도 개시일이 해당기산일임
	신주	증자 등으로 회계연도의 중간에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해당 기산일은 일반적으로 발행일임
기명 여부	기명주	주식소유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
	무기명주	주식소유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
상장 여부	상장주식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이 아닌 주식



## 02 | 주식시장에 대해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장내 주식시장과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거래되는 장외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장내주식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이 있으며, 장외주식시장에는 K-OTC 시장이 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주식시장의 구분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장내주식시장과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거래되는 장외주식시장이 있습니다.

#### 1) 장내주식시장

장내주식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5. 1. 한국거래소가 출범하면서 과거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운영하였던 시장은 유가증권시장으로 (주)코스닥증권시장에서 개설·운영하였던 시장은 그대로 코스닥시장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식시장을 계속적으로 분리·운영하는 이유는 각각의 시장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가) 유가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에는 규모가 크고 경영실적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 발행한 주식들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 나) 코스닥시장

코스닥시장은 1996. 7. 정부의 유망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은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다) 코넥스시장

2013. 7.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시장을 코스닥시장 산하에 개설하였습니다. 코넥스시장은 벤처 캐피털과 같은 모험자본의 선순환(투자회수⇔재투자) 체계를 지원하는 시장으로 초기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상장요건의 완화, 공시항목의 축소, 지배구조 의무 완화 및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 기회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장외주식시장(K-OTC 시장)

K-OTC시장은 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일종의 장외시장으로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0. 3. 한국증권업협회가 제3시장으로 개설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5. 7. 정부의 벤처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그 명칭을 프리보드로 바꾸게 되었고, 2013년 7월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시장 개설을 계기로 K-OTC시장으로 명칭을 바꾸어 중소기업을 포함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전용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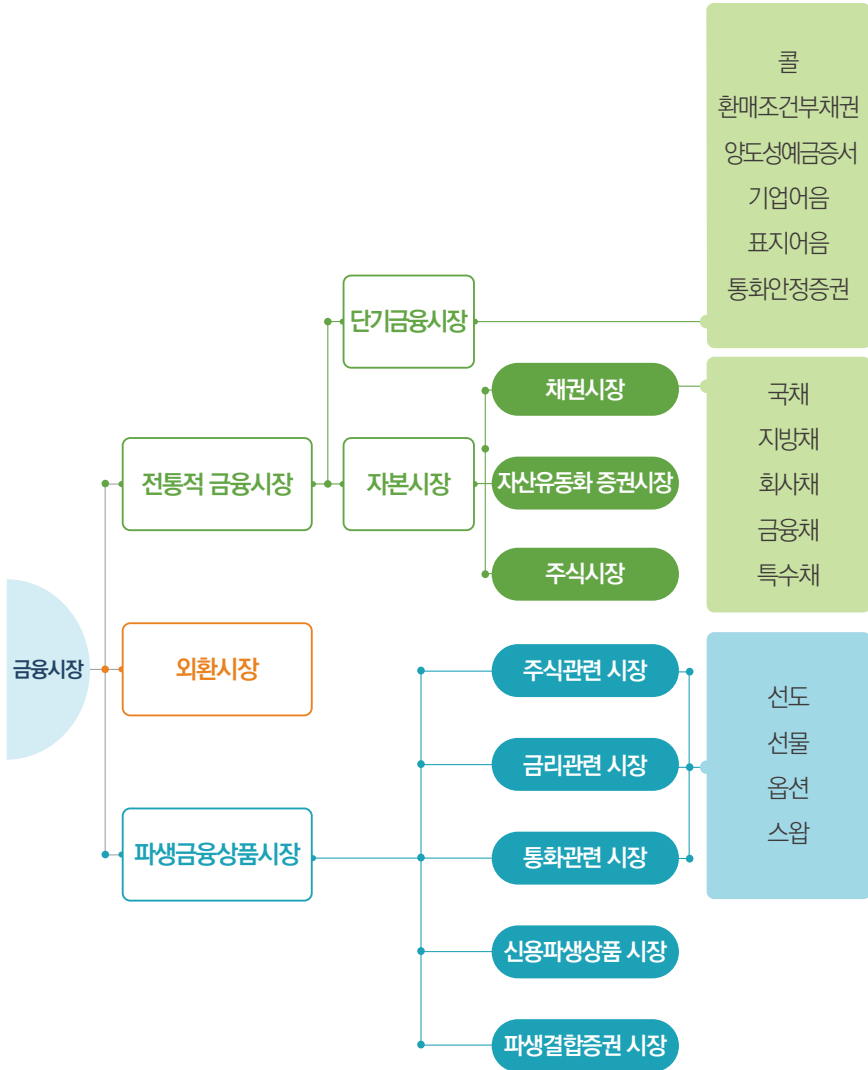
 **참고**  
**주식시장의 구분**

구분	장내시장			장외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K-OTC
설립시기	1956. 3.	1996. 7.	2013. 7.	2000. 3.
시장특성	중대형, 우량기업 위주	중소벤처 및 성장기업 위주	초기 중소·벤처기업	비상장주식 (중소기업 포함)



참고

우리나라 금융시장 구조<sup>2)</sup>



2)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한국은행

## 03 | 상장이란 무엇인가요?



상장(Listing)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은 거래소에 최초로 상장되는 신규상장을 의미하며, 이 밖에도 재상장, 우회상장, 추가상장, 변경상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상장의 개념과 의미

주식시장에는 개인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자가 참여하므로 이들의 보호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식 발행회사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한 상장 절차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장(Listing)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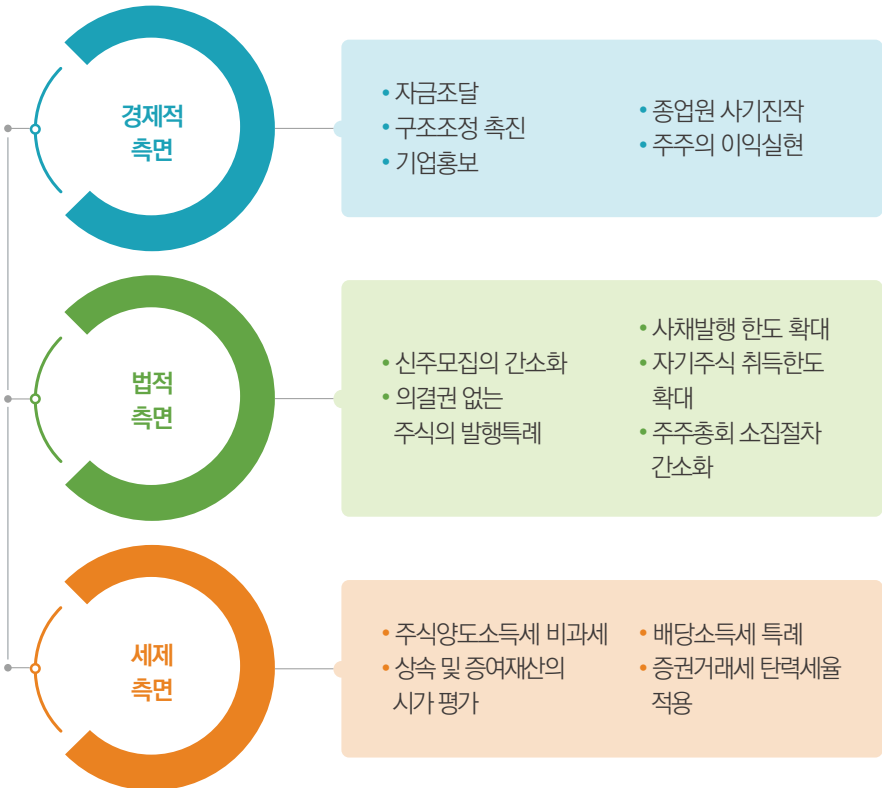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상장은 거래소에 최초로 상장되는 신규상장을 의미하며, 이 밖에도 재상장, 우회상장, 추가상장, 변경상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상장은 상장폐지 후 5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와 인적분할로 신설된 기업이나 상장법인 간 합병으로 설립된 기업이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이며, 우회상장은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M&A 등의 방식으로 경영지배권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상장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추가상장은 상장법인이 유·무상증자 등으로 새로이 발행하는 주권을 상장하는 것을 말하고, 변경상장은 기존에 발행된 주권을 새로운 주권으로 교체발행하여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기업은 일반투자자로부터 장기·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기업분할 재상장 제도, 지주회사 상장제도 등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고, 기업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인식이 제고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등에서 상장기업에게만 적용되는 특례규정에 따른 법적 측면의 효과와 세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  
**상장의 효과**



## 04 | 주식거래 절차도 알고 싶어요



한국거래소시장에서 주식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 회사에게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매매하려면 우선 증권회사에 가서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은 증권회사와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카드(ID)또는 통장을 교부받습니다.

거래계좌가 설정되면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매매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매주문은 영업점에서 주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HTS(Home Trading System)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상장주식거래의 일반적인 절차

한국거래소시장에서 주식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 회사에게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매매하려면 우선 증권회사에 가서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은 증권회사와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카드(ID) 또는 통장을 교부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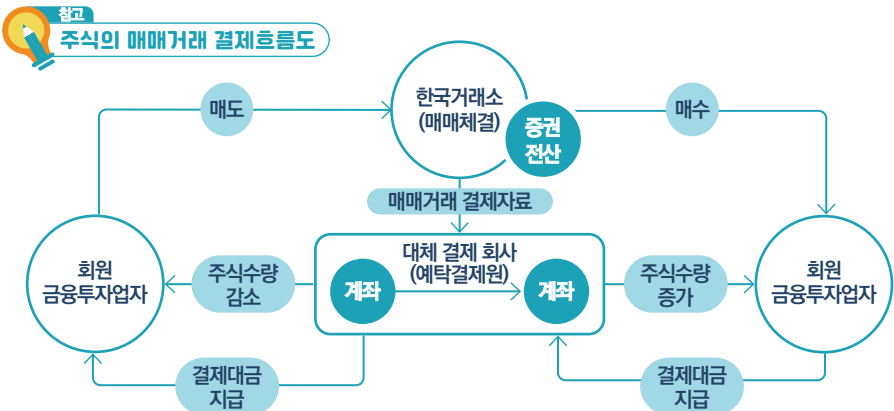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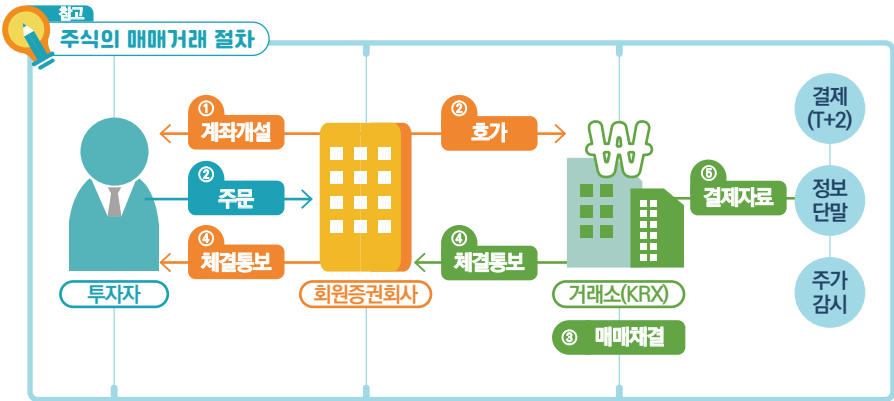
거래계좌가 설정되면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매매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매주문은 영업점에서 주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HTS(Home Trading System)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 당해 고객의 계좌에 위탁증거금이 충분히 예치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 다음 그 주문을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시스템으로 전달 합니다. 주문이 매매체결시스템에 접수되는 시점에 조건이 맞는 상대주문이 있으면 즉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매매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당일 시장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조건이 맞는 상대주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그 주문은 매매가 체결되지 않습니다.

거래소의 주식시장에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면 주식을 산 사람은 매수대금을, 판 사람은 매도한 주식을 서로 주고 받는 절차, 즉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결제방법은 각 나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은 매매체결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두 번째 영업일에 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투자자는 통상 증권회사에 위탁수수료를 내야하며, 주식을 매도한 때에는 매도대금의 0.1 ~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야합니다.



## 05 | 상장주식 매매거래의 종류 및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립니다. 주식시장에는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이 있습니다. 정규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단일장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정규시장 외에 추가적인 매매거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시간외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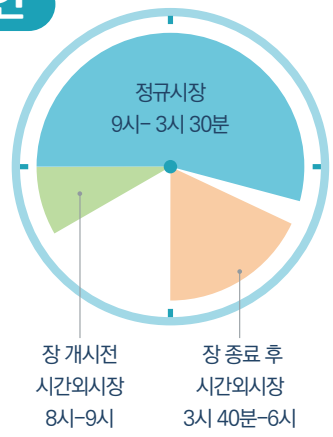
시간외시장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 장개시전시간외시장과 오후 3시 40분부터 6시까지 열리는 장종료후시간외시장이 있습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상장주식 매매거래의 종류 및 시간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립니다. 주식시장에는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이 있습니다. 정규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단일장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정규시장 외에 추가적인 매매거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시간외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시장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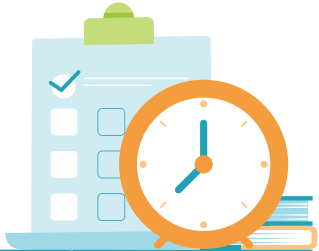


운영하는 장개시전시간외시장과 오후 3시 40분부터 6시까지 열리는 장종료후시간외 시장이 있습니다.

시간외종가매매는 장종료 후 또는 장개시 전 일정 시간 동안 호가를 접수하여 조건이 맞는 호가가 있는 경우 즉시 매매를 체결시키며, 시간외단일가매매는 장종료 후 10분 단위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시킵니다.

이외에 정규시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매매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대량매매 시장을 정규시장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량매매시장에는 시간외대량매매와 장종료대량(바스켓)매매가 있습니다.

**참고**  
상장주식 매매거래 시간 및 호가접수시간



구분	매매거래 시간	호가접수시간
정규시장	09:00 ~ 15:30	08:30 ~ 15:30
시간외시장	장 개시 전	08:00 ~ 09:00*
	장 개시 후	15:40 ~ 18:00

\* 단, 장 개시 전 종가매매는 08:30 ~ 08:40 (10분)

## 06 | 주식 매매계약은 어떻게 체결되나요?



상장된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은 거래방식 등에 따라 단일가매매 또는 접속매매의 방법으로 체결됩니다.

단일가매매는 수요와 공급을 집중시켜 균형가격형성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이용되는 매매방법으로서 일정시간동안 매도·매수호가를 접수하여 가격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 간에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며,

접속매매(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매매거래 시간 중에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 즉 먼저 접수된 호가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매매방법으로서, 가격우선의 원칙과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매매계약체결방법

##### 1) 단일가 매매

단일가매매는 수요와 공급을 집중시켜 균형가격형성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이용되는 매매방법으로서 일정시간동안 매도·매수호가를 접수하여 가격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 간에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며, 모든 단일가매매는 마감시점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해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임의의 시간에 종료됩니다.

즉, 투자자 주문을 접수 즉시 체결시키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가격으로 일시에 체결시키는 방식으로서 시가 및 종가 등을 결정하는 경우와 거래소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과거에는 단일가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우선순위는 동시호가로 간주하여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001년 9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동시호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가매매에 참여한 호가의 경우에도 가격우선 및 시간우선 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간에 전량을 체결하고, 동일가격대의 호가간에는 수량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단, 시가(정규장 최초의 가격) 또는 장이 중단된 후 재개된 첫 가격이 단일가매매 방식을 통해 상·하한가로 형성되는 때에 한하여 상한가의 경우 당해 가격대의 매수호가, 하한가의 경우 당해 가격대의 매도호가에 대해서만 체결수량을 배분합니다. 이는 상·하한가로의 시가 형성 시에 수량을 배분함으로써 당일 중 매매체결을 원하는 투자자의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래 예에서와 같이 가장 높은 가격의 매수호와 가장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를 순차적으로 체결시키고 15,250원인 동일가격에서도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여 매매를 체결합니다.

**참고**  
**단일가 매매 시 매매체결방법 예시**

매도수량	가격	매수수량
	15,400	● 1,000
○○	15,350	● 300
○○	15,300	● 200
100 ● 500 ● 1,000 ○ 2,000 ○	15,250	● 200 ● 300
150 ●	15,000	○○
150 ● 500 ●	15,150	○
500 ●	15,100	○○○
150 ●	15,050	

○ 미체결 호가 ● 일부 체결호가 ● 전량체결호가 (각 칸의 상단 주문이 우선 주문임)

예시의 표는 단일가매매시간동안 접수된 호가 현황입니다.  
 이들 호가를 가지고 합치되는 하나의 가격을 정하여 체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매수호가와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수량부터 지워나가다 보면 조건이 합치  
 되는 가격에 도달하게 됩니다. 위의 그림에서는 15,250원이 합치되는 가격인데요,  
 매수수량에 검은 동그라미로 표시한 2,000주와 매도수량에 검은 동그라미로 표시한  
 2,000주가 단일가매매 종료 시점에 체결이 됩니다. 이때 체결가격은  
 모두 15,250원이 됩니다.  
 매도호가 15,250원에 500주를 낸 매도자는 450주만 체결이 되며,  
 남은 50주는 15,250원 이상으로 매수하겠다는 희망자가 나와야  
 체결이 됩니다. 1,000주 매도자는 전량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2) 접속 매매**

접속매매(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매매거래 시간 중에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 즉,  
 먼저 접수된 호가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매매방법으로서, 가격우선의 원칙과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즉 장중에 이미 나와있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보고 그 가격에 맞게 주문을 내면 조건에  
 맞는 경우 즉시 체결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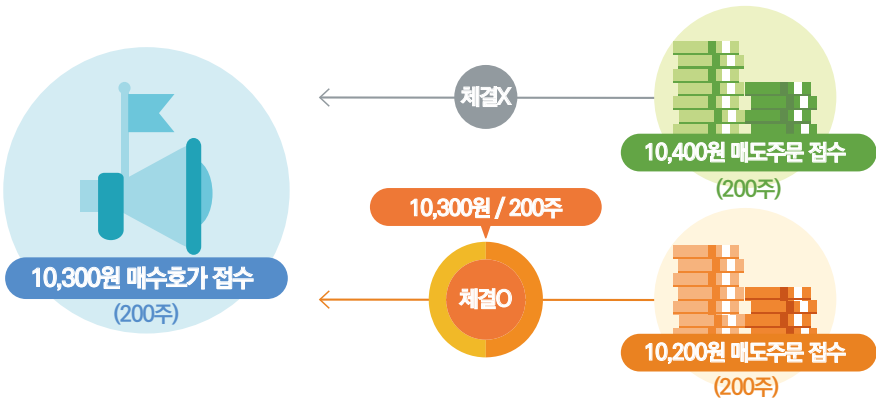
아래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①, ②, ③ 등 번호는 호가접수 순서입니다)

**참고**  
**예시 - 1**

매도수량	가격	매수수량
	10,500	
② 200	10,400	
	10,300	① 200
③ 200	10,200	
	10,100	

① 200주 10,300원에 매수호가 있는 상태에서 ② 200주 10,400원에 매도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가격이므로 체결이 되지 않으며 다음 주문을 기다리게 됩니다.

③ 200주 10,200원에 매도호가 접수되면, 매도희망가보다 더 높은 매수가격 (10,300)이 있으므로 체결을 시킵니다. 이때 체결가격은 먼저 접수한 가격(선행호가)인 매수호가에 맞추어 10,300원에 200주가 체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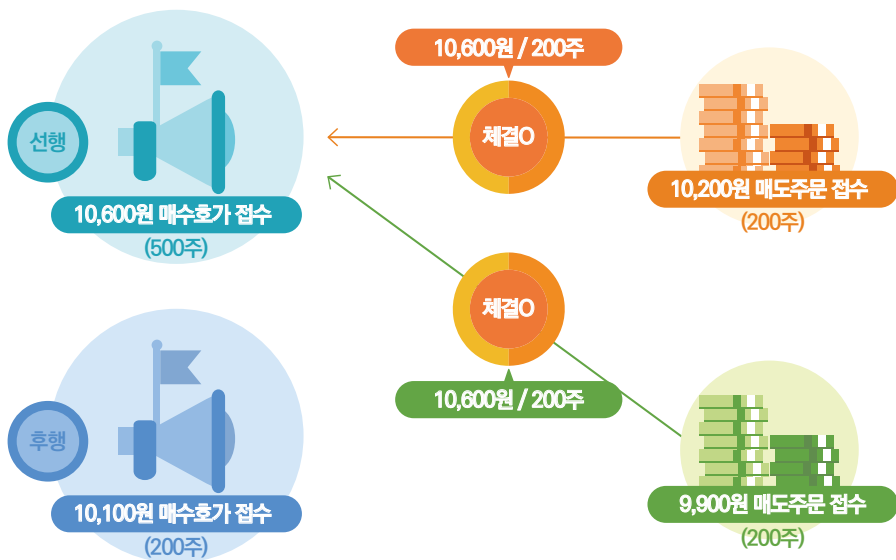


**참고**  
예시 -2

매도수량	가격	매수수량
	10,600	① 500
	10,500	
	10,400	
	10,300	
③ 200	10,200	
	10,100	② 200
	10,000	
④ 200	9,900	

10,600원과 10,100원에 매수호가 있는 상태에서 ③ 200주 10,200원 매도 호가가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희망가보다 높은 매수호가 있으므로 ① 번 호가에 맞추어 10,600원에 200주 체결됩니다.

④ 200주 9,900원에 매도호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때 매수호가에는 10,600원에 300주와 10,100원에 200주 호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둘 다 9,900원 매도 희망가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① 호가가 가장 먼저 접수된 호가이므로 9,900원 접수한 매도자는 10,600원에 매수주문을 낸 매수자와 체결이 이루어지며 체결가격은 선행호가인 10,600원이 됩니다.



## 07 | 단일가매매와 접속매매의 적용시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정규시장 거래방법 및 시간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구분	거래 시간
오전 단일가매매	08:30 ~ 09:00
접속매매	09:00 ~ 15:20
오후 단일가매매	15:20 ~ 15:30

시간외시장 거래방법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거래 시간
장 개시 전 증가매매	08:30 ~ 08:40
장 마감 후 증가매매	15:40 ~ 16:00
시간외단일가	16:00 ~ 18:00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주식시장의 장운영 시간

단일가매매와 접속매매의 차이점을 이해하였다면, 단일가매매와 접속매매가 각각 적용 되는 시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 1) 정규시장

정규시장 거래 시간은 09:00 ~ 15:30 까지라고 말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구분	거래 시간
오전 단일가매매	08:30 ~ 09:00
접속매매	09:00 ~ 15:20
오후 단일가매매	15:20 ~ 15:30

단일가매매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전 단일가매매시간동안 접수된 주문을 가지고 하나의 가격이 정해지며 그것이 그날의 시초가(시가)가 되어 09:00에 장이 개시되며 체결이 됩니다.

그 이후 15:20까지는 접속매매시간으로 주문이 접수되는 즉시 조건이 맞으면 실시간으로 체결이 됩니다.

(다만, 거래소가 정하여 발표하는 경우에는 전 종목 또는 특정종목에 대하여 단일가매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후 단일가매매시간에는 그 날 정규시간동안 접수된 주문과 마지막 10분 동안 접수된 주문 모두를 가지고 하나의 가격이 정해지면서 체결이 되며 그날의 종가가 됩니다.

## 2) 시간외시장

시간외시장 거래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거래 시간
장 개시 전 종가매매	08:30 ~ 08:40
장 마감 후 종가매매	15:40 ~ 16:00
시간외단일가	16:00 ~ 18:00

장 개시 전 종가매매시간은 무조건 전일종가로 거래하는 시간이며, 장 마감 후 종가매매는 당일의 종가로만 거래하는 시간입니다. 이때에는 가격은 입력하지 않고 수량만 입력하여 주문을 내며, 거래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체결이 됩니다.

시간외단일가는 10분 단위로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하여 주문을 체결시키는 시간입니다.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10% 상승 또는 하락한 가격으로 주문을 낼 수 있으나, 당일 정규시장의 상·하한가를 벗어난 주문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규장 마감 후 주식시장 또는 종목에 이슈가 발생한 경우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만, 이때 형성된 가격은 익일 장개시 시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정규장에 10,000원에 끝났으나 시간외단일가 시간에 11,000원에 종료된 경우라도 그 다음 날에는 10,000원을 기준으로 상·하한가가 결정되어 거래가 시작됩니다.



### [유의사항] 거래 시간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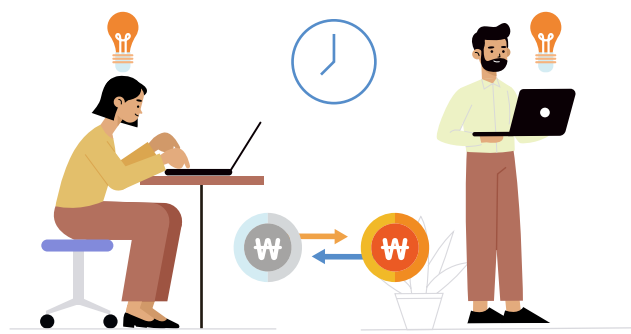
주식등 주문시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을 잘 구분하여야 합니다. 정규시장과 시간외 시장이 서로 중복되는 시간이 있으니 잘 체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규시장에 접수한 주문은 정규시장 시간에만 유효하므로 시간외시장에 참여하고 싶으면 다시 주문을 내야 합니다. 증권사마다 정규시장 주문과 시간외시장 주문시 주문화면에서 선택하는 방식이 다르거나 별도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매매 시스템을 잘 확인하고 주문을 내어야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08 | 기타 매매계약체결방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앞(7번)에서 설명드린 단일가매매 및 접속매매 외에도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매매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sup>1)</sup>시간외종가매매, <sup>2)</sup>시간외단일가매매, <sup>3)</sup>시간외대량매매, <sup>4)</sup>시간외바스켓매매, <sup>5)</sup>장중 대량·바스켓매매, <sup>6)</sup>경쟁대량매매(A-Blox) 등의 다양한 매매계약 체결제도가 있습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특별한 매매계약체결방법

##### 1)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종가매매는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매매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규매매시간 종료 후 및 장 개시 전 일정 시간 동안 당일종가로 시간우선의 원칙만 적용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간외종가매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거래대상	주권, ETF, ETN, 외국주식예탁증권(당일 거래미형성 종목 제외)
거래 시간	08:30 ~ 08:40, 15:40 ~ 16:00(30분)
호가접수시간	08:30 ~ 08:40, 15:30 ~ 16:00(40분)
체결가격	당일종가(장 종료 후), 전일종가(장 개시 전)
주문유형	종가주문
매매체결	시간우선원칙을 적용
정정취소	주문가격의 정정은 불가, 매매체결전까지 수량정정 및 취소는 가능
매매수량단위	1주

## 2) 시간외단일가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는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매매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 종료 후 일정시간동안 10분 단위 단일가매매를 통하여 당일종가  $\pm 10\%$  이내(다만, 당일 상·하한가 이내)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

시간외단일가매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거래대상	주권, ETF, ETN, 외국주식예탁증권(당일 거래미형성 종목 제외)
거래 시간	16:00 ~ 18:00(120분)
매매방법	10분 단위 주기적 단일가매매
가격변동범위	당일종가 $\pm 10\%$ (다만, 당일 상·하한가 이내)
매매수량단위	1주
주문유형	지정가주문

## 3)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 시간 동안 매매수량단위의 5,000배(ETF·ETN : 500배)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의 호가로서 종목 및 수량이 동일한 매도·매수호가에 대하여 회원이 당일의 상·하한가 범위내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 또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중 어느 일방은 단일회원의 호가이어야 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거래대상	주권, ETF, ETN, 외국주식예탁증권(당일 거래미형성 종목 제외)
거래 시간	08:00 ~ 09:00, 15:40 ~ 18:00(200분)
체결가격	투자자간 협상가격(당일 상·하한가 이내)
주문유형	주문내용이 일치하는 매도·매수 쌍방주문
매매수량	매매수량단위 5,000배(ETF·ETN: 500배) 이상 또는 수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이 1억 원 이상
매매체결	매도·매수 쌍방의 당해 호가 간 당해 주문가격으로 체결
정정, 취소	매매체결전까지 정정 및 취소 가능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 시작 전·후에 주식을 넘기는 거래. 이는 거래소 시장에서 한꺼번에 대량의 주식이 거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한 방안임. 다만, 장중 주가 급락은 피할 수 있으나 다음날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음

#### 4) 시간외바스켓매매

일정한 수 이상의 다수종목으로 구성된 주식집단을 시간외매매 거래시간 중에 일괄하여 매매거래 하고자 하는 매도·매수 쌍방주문에 대하여, 이를 당해 호가간에 체결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수량요건은 5종목 이상 그리고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가격은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입니다. 또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중 어느 일방은 단일회원의 호가이어야 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거래대상	주권, ETF, ETN, 외국주식예탁증권(당일 거래정지종목 제외)
거래 시간	08:00 ~ 09:00, 15:40 ~ 18:00 (200분)
체결가격	투자자간 협상가격(당일 상·하한가 이내)
주문유형	주문내용이 일치하는 매도·매수 쌍방주문
매매수량	5종목 이상 & 10억 원 이상
매매체결	매도·매수 쌍방의 당해 호가간 당해 주문가격으로 체결
정정, 취소	매매체결 전까지 정정 및 취소 가능

## 5) 장중대량/바스켓매매

장중대량매매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 시간(09:00~15:30)동안 회원이 대량 및 바스켓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 수량 요건은 시간외대량·바스켓매매와 동일하며, 가격은 당해호가 접수직전까지 형성된 최고·최저가격 이내로 가능합니다. 또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중 어느 일방은 단일회원의 호가 이어야 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거래대상	주권, ETF, ETN, 외국주식예탁증권 (당해 호가 접수직전까지 정규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거래 시간	09:00 ~ 15:30(390분)
체결가격	투자자간 협상가격 (당해 호가 접수직전까지 형성된 최고·최저가격 이내)
주문유형	주문내용이 일치하는 매도·매수 쌍방주문
매매수량	시간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 요건과 동일
매매체결	매도·매수 쌍방당사자간 합의한 가격으로 체결
정정, 취소	매매체결전까지 정정 및 취소 가능

## 6) 경쟁대량매매(A-Blox)

익명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의 일정규모(아래 참조) 이상의 대량호가를 정규시장 호가와 별도로 집중시켜 이들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때 체결가격은 당해 종목의 거래량기준평균가격(VWAP)으로서 장종료 후에 산출되어 각 당사자에 통보됩니다. 장중에는 경쟁대량매매 호가의 수량 및 체결정보는 미공개 되지만 종목별로 경쟁대량매매를 위한매수·매도 호가의 유·무 정보는 최소한의 거래정보로서 정규시장 중에 한하여 공개됩니다.

구분	주요내용
거래대상	주권, ETF, ETN, 외국주식예탁증권(관리종목과 정리매매종목은 제외)
거래 시간	(정규시장) 09:00 ~ 15:00 (시간외시장) 08:00 ~ 09:00
체결가격	(정규시장) 체결시점 직후부터의 VWAP*. 다만, 정규시장 중 일반거래 미형성 등으로 경쟁대량매매에 적용할 VWAP가 없는 경우는 당일 종가 (종가가 없는 경우 기준가격)를 적용 * 체결시점부터 장종료시까지의 총거래대금 ÷ 총거래량 (시간외시장) 당일 VWAP* * 정규시장 개시 시점부터 장종료시까지의 총거래대금 ÷ 총거래량
주문요건	최소호가규모 : 5억 원 이상(당일 기준가격×호가수량) 매매수량단위 : 100주
매매체결	상대주문이 있는 경우 즉시 매매를 체결하는 연속매매(접속매매) 방식이 적용되며,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먼저 접수된 주문부터 전량 체결

## 09 | 상장주식 거래 후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상장주식의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면 투자자는 증권회사와 결제를 하고, 증권회사는 거래소(또는 청산소)와 결제를 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종결됩니다. 주식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두 번째 거래일(T+2일)에 결제됩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상장주식시장의 결제방법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주식의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면 투자자는 증권회사와 결제를 하고, 증권회사는 거래소(또는 청산소)와 결제를 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종결됩니다.

주식의 경우 매매거래일로부터 두 번째 거래일에 결제됩니다.

증권시장에서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거래를 하기 때문에 결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와 관련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1) 청산(Clearing)

주식의 매매체결이 끝나면 한국거래소는 회원인 증권회사들 간에 성립된 매매거래에 개입하여 모든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되고, 모든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되는 중앙거래당사자(CCP)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채권·채무를 차감하여 확정하고 결제기관에 결제지시를 하며 결제가 이행되기까지 결제를 보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청산(Clearing)이라 하며, CCP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청산기관(Clearing House)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에 의거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분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산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째, 청산기관이 결제이행을 보장하고 동시에 차감을 통해 결제규모와 결제건수가 축소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위험이 없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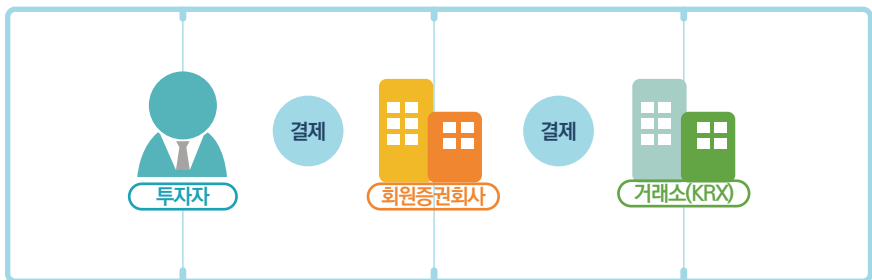
둘째로 증권회사는 청산기관의 신용을 믿고 매매를 할 수 있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청산기관과 직접 결제를 하게되므로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셋째로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즉 일부 증권회사의 결제대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청산기관이 즉시 유동성을 투입함으로써 시장의 연쇄적인 결제지연 또는 결제불이행 발생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2) 결제(Settlement)

결제란 청산과정을 통해 확정된 채권과 채무를 중앙거래당사자(CCP)와 회원 간에 증권의 인도 및 대금의 지급을 이행함으로써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결제대상 증권의 인도는 계좌간대체방식으로 예탁결제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대금지급은 계좌 간 대체방식으로 결제은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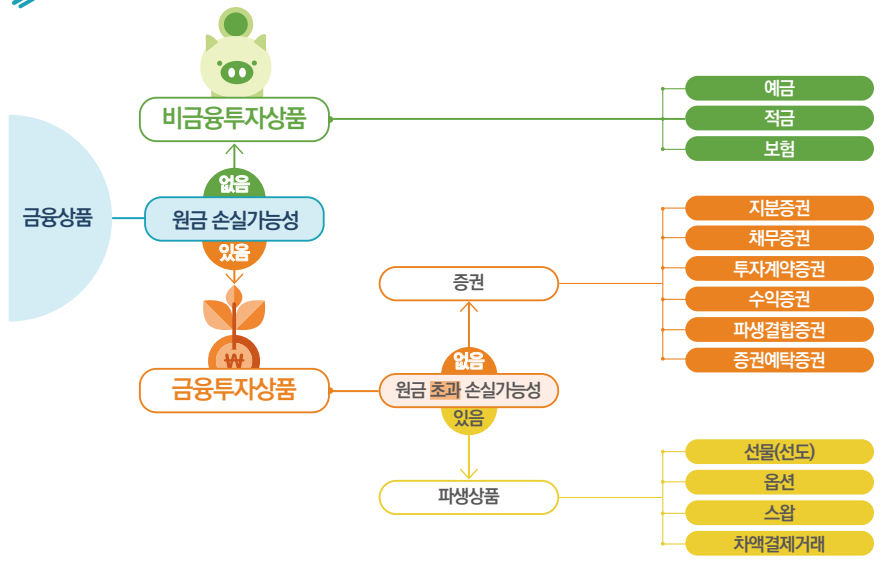
# 10 | 주식과 유사한 금융투자상품도 많은데... 금융투자상품이란 무엇인가요?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투자한 원금의 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의 초과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됩니다.

**참고**  
금융상품의 종류





## 11 |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이 있습니다.

	구분	종류
증권	지분증권	주권(주식), 신주인수권 등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전환사채 등
	투자계약증권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등
	수익증권	신탁수익증권 등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ELS) 등
	증권예탁증권	국내 증권예탁증권(KDR) 등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증권의 개념 및 종류

#### 1) 지분증권

주권  
(주식)

주주의 출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식은 국내 주식과 국외주식으로 구분됩니다.



**주권 (주식)**

- 국내 주식** 증권시장(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 여부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주식과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으로 구분됩니다.
- 국외 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은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외 위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포함)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 구분됩니다.

**신주 인수권**

회사가 합병, 증자 등을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 자체도 상장이 가능하며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식등 개념에 포함되며, 신주인수권 증서와 신주인수권증권으로 구분됩니다.

**2) 채무증권**

**국채** ... 정부가 금전차입을 목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 주택채권 등이 있습니다.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공채, 상수도공채 등이 있습니다.

**특수채** ...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한국전력공사채권, 기술개발금융 채권, 토지개발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등이 있습니다.

**회사채** ... 상법상 주식회사가 특정인 또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회사가 채무자임을 표시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사채(社債)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회사채는 주식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 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으로 구분됩니다.

## 기타

통상적인 채권은 아니지만 단기 자금수요를 충당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 기업어음(CP),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있습니다.

### 3)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 4) 수익증권

#### 가)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수익증권이란 고객이 맡긴 재산을 신탁업자가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가 표시된 증권을 말합니다. 금전신탁계약은 신탁업자가 수탁하는 재산의 종류별로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신탁

수탁자가 신탁 인수 시 신탁재산으로 금전을 수탁하여 신탁 종료시에 금전 또는 운용자산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입니다.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과 지정하지 아니하는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금전신탁

위탁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신탁을 운용하므로 신탁상품 보다는 신탁계약의 형태를 가지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 불특정 금전신탁

불특정금전신탁의 주요 상품으로는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 신탁 등이 있으나 2004년 1월 이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개인연금신탁을 제외하고 신규판매가 대부분 금지되었습니다.



신탁 인수 시 신탁재산으로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을 수탁하여 ...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관리·처분·운용한 후 신탁 종료 시에 금전 또는 신탁 재산의 운용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투자금 등을 모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 등)가 그 재산을 신탁업자(은행 등)로 하여금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 형태)으로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한 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은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가 수탁자인 신탁업자와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을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운용하도록 신탁업자에게 지시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5) 파생결합증권



가)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 Linked Warrant)

미래 일정시점에 특정 주식 또는 주가지수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옵션과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ELW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과 기타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투자금을 주식·주가지수·채권·원자재·통화·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입니다. ELS와 DLS는 상품의 구조나 운용방식은 비슷하나,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을 ELS라 하고, 그 외 금리·환율·일반상품의 가격 및 신용위험 지표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을 DLS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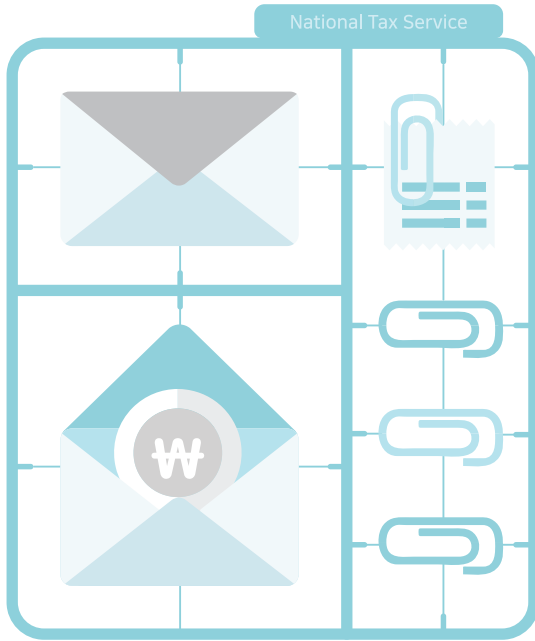


#### 다)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

기초지수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  
증권의 일종으로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되며, 만기 이전에 반대 매매가 가능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ETN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별도의 중도 상환 절차 없이 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확정할 수 있어 상장지수펀드(ETF)와 유사합니다.

### 6) 증권예탁증권(DR, Depository Receipts)

증권예탁증권이란 지분증권·채무증권·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파생결합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즉, 기업이 국외자본 조달 목적 등으로 원주(原株)는 한국  
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동 원주를 기반으로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식대체증서를 말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제2장

# 주식등 양도소득의 이해



## 12 | 주식등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를 알고 싶어요



주식에 대한 과세는 주식을 보유할 때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와 주식의 유·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주식의 보유에 대해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주식의 유상 이전에 대하여는 거래세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및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세(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주식에 대한 세금

구분	이전(취득)		보유(배당)	이전(양도)	
	유상	무상		유상	무상
과세여부	-	과세	과세	과세	-
세목	-	증여세 (상속세)	배당소득세* or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

\* 관련 지방소득세도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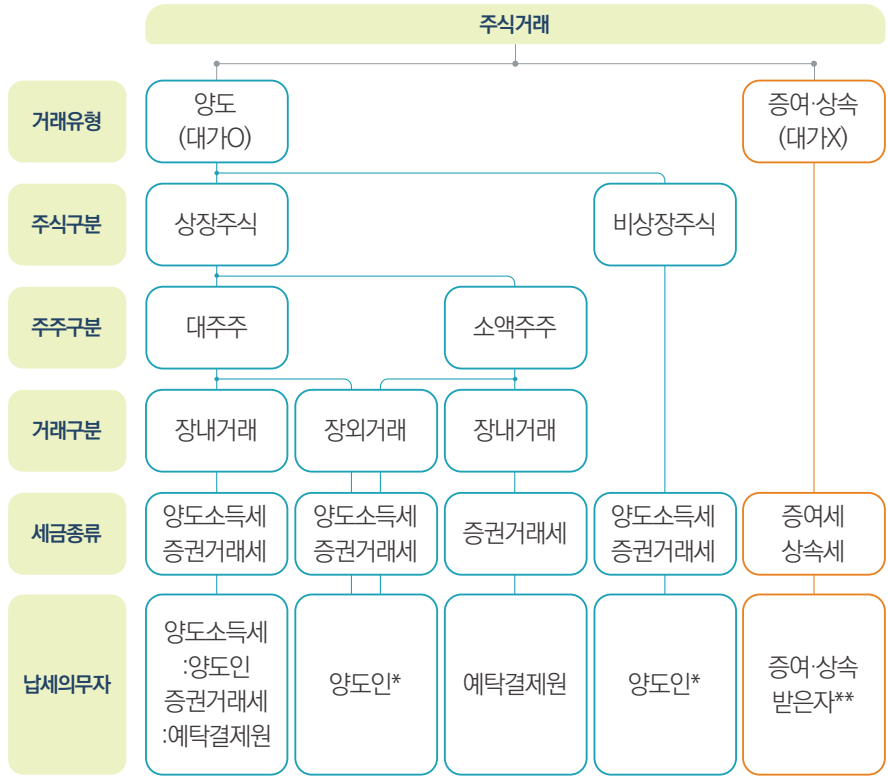
제2절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 13 |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조금 더 알아보기**



\*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금융투자업자입니다.

\*\* 증여·상속의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14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증권예약증권(DR)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국외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의 종류 및 구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증권예약증권(DR)이 포함됩니다.

국내주식등 및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출자지분은 주로 인적회사의 지분을 의미하며, 여기서 인적회사란 사원 상호간의 결합 관계가 깊고 회사의 활동이 사원들의 인적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회사로 사원들이 공동 출자하고 경영에도 참여하며 책임도 함께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대표적인 인적회사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장주식등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대주주 외의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2) 비상장주식등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주주 외의 자가 K-OTC(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 시장)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국외주식등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경우로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4)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이란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주 및 채권자 등에게 부여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금조달 방법에 따라 그 권리의 부여 형태가 상이합니다.

#### 가) 신주인수권증서

유상증자 시 다른 사람에 비해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문서화한 증서로, 기존주주\*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시 발행합니다.<sup>3)</sup>

\* 주주는 보유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가 있음(상법 §418조①)

#### 나) 신주인수권증권

일정한 권리행사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문서화한 증서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시 낮은 이자율을 대신하여 사채권과 별도로 채권자에게 발행합니다.<sup>4)</sup>

\*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s) : 신주인수권증권이 부여된 사채로 채권과 신주인수증권의 분리가능 유무에 따라 분리형과 비(非)분리형으로 구분

3) 상법 §420의2

4) 상법 §516의5

## 5) 증권예탁증권(DR : Depository Receipts)

기업이 국외자본 조달 목적 등으로 본래 주식인 원주(原株)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동 원주를 기반으로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식대체증서를 말하며, DR은 일반적으로 유통 활성화 목적 등으로 NYSE<sup>1)</sup>, AMEX<sup>2)</sup>, NASDAQ<sup>3)</sup>, LSE<sup>4)</sup>, LuxSE<sup>5)</sup> 등을 통해 상장거래 됩니다.(장·내외 거래 모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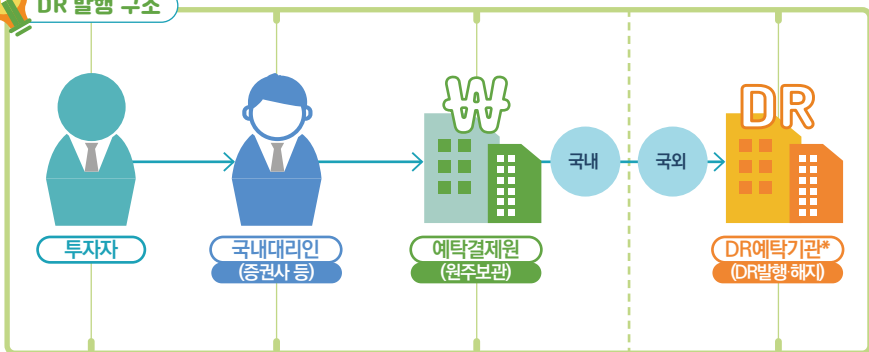
<sup>1)</sup>뉴욕증권거래소, <sup>2)</sup>아메리칸증권거래소, <sup>3)</sup>미국장외주식시장, <sup>4)</sup>런던증권거래소, <sup>5)</sup>룩셈부르크증권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배당·증자 참여 등 주주권을 행사(DR에 배당금 지급 시 한국예탁결제원이 배당소득 원천징수)하는 등 일반주권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며, 2011년 이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sup>5)</sup>

### 참고 DR 예시

- ①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s) : 미국시장에서 발행·유통되는 DR
- ② GDR(Global Depository Receipts) : 미국 및 유로시장에서 동시 발행되며 국내 기업이 가장 많이 이용 하는 방식
- ③ KDR(Korean Depository Receipts) :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발행한 DR

### 참고 DR 발행 구조



\* DR예탁기관 : 국외에서 DR 발행·해지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내의 DR발행사 및 발행에 대한 권리, 절차 등의 계약을 맺음 (Bank of New York Mellon, Citibank N.A., Deutsche Bank Trust Company, Jp Morgan Chase Bank)



## 15 | 양도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 참고

####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개념

- 1. 매도** : 매매를 매도자 측면에서 바라본 것으로, 매매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563) 매매의 결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러한 쌍방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민법 §568)
- 2. 교환** : 민법상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한편,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민법의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567, §596, §597)
- 3.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부동산 등 금전 외의 양도 가능한 자산으로서 회사의 설립 시 또는 신주발행 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 16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궁금해요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종목별 지분율이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2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4. 1. 1. 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0억 원

이 경우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국기법상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및 친족, 경영지배관계 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며, 최대주주<sup>6)</sup>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으로만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참고

### 연도별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요약

보유 주식이 아래의 기준 이상인 경우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

구분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sup>3)</sup>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13. 6. 30. 이전	3%	100억 원	5%	50억 원	-	-
'13. 7. 1. 이후 <sup>1)</sup>	2%	50억 원	4%	40억 원	4%	10억 원
'16. 4. 1. 이후 <sup>2)</sup>	1%	25억 원	2%	20억 원	4%	10억 원
'18. 4. 1. 이후	1%	15억 원	2%	15억 원	4%	10억 원
'20. 4. 1. 이후	1%	10억 원	2%	10억 원	4%	10억 원
'24. 1. 1. 이후	1%	50억 원	2%	50억 원	4%	50억 원

1) '13. 7. 1. 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22)

2) '16. 4.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1)

3) 코넥스 시장은 '13. 8. 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가 해당법인의 주주 1인들 중 최대인 경우 해당 주주를 말함

## 제3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 17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중 최대주주 판정 시 보유지분을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2023년 이후 양도분 부터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나, 대주주 중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참고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구분	특수관계인의 범위
친족	① 4촌이내 혈족                      ② 3촌이내 인척 ③ 배우자                              ④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⑤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
경영 지배 관계	①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상기 친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상기 친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상기 ①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특수관계 판단은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함(국기법 §2, 20호)





참고

## 국기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원칙적으로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국기법 §2, 20호)

### 1. 친족관계

- ①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②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 ③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친생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④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 혈족의 범위



\*\* 인척 : 자기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2. 경제적 연관관계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에는 적용 배제



### 3. 경영지배관계

####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 등 : 본인, 친족 및 경제적 연관관계자

- \*\* 지배 : i) 영리법인 : 30% 이상 출자 or 임원 임면권행사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
- ii) 비영리법인 : 이사의 과반수 차지 or 3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

#### ② 본인이 법인인 경우



\* 지배 : 직접 또는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1차·2차 지배 :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동일

## 18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대주주 판정은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대주주 판정기준일은 주식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되, 지분율 기준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기준에 미달했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그 취득일 이후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기

대주주 판정은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지분율 기준

주식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기준에 미달했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그 취득일 이후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2) 시가총액 기준

항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참고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점

2023. 8.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12월말 법인(사업연도 1.1.~12.31.)은 2022.12. 31. 3월말 법인(사업연도 4. 1. ~ 3. 31.)은 2023. 3. 31.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 휴일등으로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합니다.



## 제3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19 | 상장주식을 연도 말에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나요?

주식등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하므로 매도체결 시기와 매도 대금을 수취하는 시기가 다른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실제 양도시기를 유의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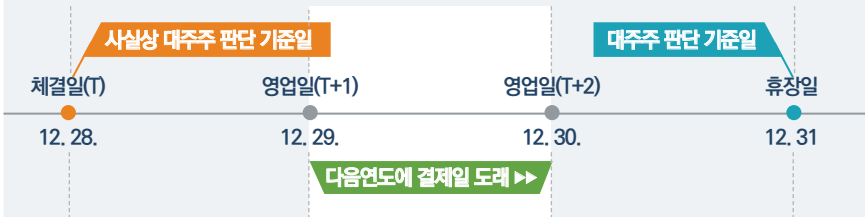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매도체결일부터 2일(휴일 제외)이 되는 날에 매도대금이 지급되므로, 결제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 참고

##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사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 31. 한국거래소 휴장으로 늦어도 12. 28.까지 거래(체결) 하여야만 12.30.에 최종 반영(결제)되며, 12. 29. ~ 12. 30. 거래(체결)분은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납세자 甲의 보유 잔고가 12. 28. 기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12. 29. 이후 잔고를 처분하였더라도 해당연도에는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기에 주식보유현황에 처분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연도 말 기준 甲은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 '23년 양도 주식(12월 결산법인)은 '22.12.30.이 한국거래소 휴장일이기 때문에 연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짜인 '22.12.27. 계약체결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게 됨

## 20 | 법인이 연도 중 신설되었거나 합병·분할한 경우 대주주 요건 판정기준일은 언제가 되나요?



법인의 신설, 합병, 분할 시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피합병  
법인의 합병등기일

### 분할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신주를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분할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 신설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

제3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21 | 기타 대주주 판정 시  
유의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주식등을 대여한 경우,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경우, 연도 중에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조금 더 알아보기****가.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등 대주주 판정시 유의사항****1) 주식등 대여 시 대주주 판단**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sup>7)</sup>

**2)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시 대주주 판단**

거주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sup>8)</sup>

**3) 연도 중에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방법**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판정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

7) 소득령 §157⑩

8) 소득령 §157⑪

## 22 | '23년 말에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되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23년 말에 상향된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50억 원) 기준은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24년 상반기 양도분에 대하여 '24년 8월 예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

대주주 기준(금액) 상향 관련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23. 12. 21. 배포)

###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상향 (종목당 10억 원 ▶ 50억 원)은 올해부터 적용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직전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보유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자로 금년에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 기준 종목당 50억 원 미만 주식보유자의 경우 내년 상장주식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금년에 보유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 23 | 비상장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대주주만 해당되나요?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인 K-OTC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4.1.1. 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0억 원



**참고**  
**한국장외시장(K-OTC)과 코넥스(KONEX)시장 비교**

구분	K-OTC 시장(Korea Over The Counter)	코넥스 시장(Korea New Exchange)						
개요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설·운영하는 제도화 조직화된 장외시장 (자본시장법 §286, 시행령§178)	코스닥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원활히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자본시장 (자본시장법 시행령 §11②)  * 코넥스시장 주식의 세법상 취급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세법</th> <th>과세취급</th> </tr> </thead> <tbody> <tr> <td>소득법</td> <td>상장주식</td> </tr> <tr> <td>상증법</td> <td>비상장주식</td> </tr> </tbody> </table>	세법	과세취급	소득법	상장주식	상증법	비상장주식
세법	과세취급							
소득법	상장주식							
상증법	비상장주식							



구분	K-OTC 시장(Korea Over The Counter)	코넥스 시장(Korea New Exchange)
성격 ·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근거를 통한 조직화·제도화된 장외시장</li> <li>• 비신청지정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등 편입</li> </ul> </li> <li>• 투자편의성 및 결재안정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가정보와 시세정보가 투명하게 공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만 상장 가능한 초기 중소기업에 특화된 시장</li> <li>• 진입방법을 다양화하고 진입 요건도 최소화</li> <li>• 중소기업 투자전문성이 인정되는 일반 투자자의 시장참여 허용(모험 자본의 선순환 지원)</li> <li>• M&amp;A의 지원 및 합병요건 완화</li> </ul>
운영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입 : 등록 또는 지정</li> <li>• 퇴출 : 최종부도, 피흡수 합병, 불성실 공시, 정규시장 상장 등</li> <li>•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법인) 정기(결산감사, 반기 검토) 및 수시 공시(주요경영사항 17가지)</li> <li>- (지정법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미제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입 : 주권양도 제한 없을 것, 감사 의견 적정, 통일규격증권발행, 지정 자문인 1사와 선임 계약 체결 등</li> <li>• 퇴출 : 감사의견거절, 공시서류 미제출, 기업설명회 미개최, 부도 해산 등</li> <li>• 공시 :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 보고서, 기업 IR개최(연2회)등</li> </ul>
현황	'23. 2. 현재 149개 법인, 149개 종목	'23. 2. 현재 134개 법인, 134개 종목

## 제 4 절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24 |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비상장주식등과 마찬가지로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외주식의 개념

외국법인이 발행하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과 국내법인이 발행하고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하고  
국내증권시장에 상장  
되어 있지 않은 주식

국내법인이 발행하고  
외국증권시장에  
상장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외주식

## 25 |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해외에 상장된 ETF(상장지수펀드)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 ETF(Exchange Traded Fund)의 개념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펀드와 주식을 합쳐놓은 성격을 갖는 금융투자상품

\*인덱스펀드 : 일반 주식형 펀드와 달리 KOSPI 200과 같은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구성한 펀드



제 4 절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 26 |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국내주식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도 국내주식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10 ~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주식과 달리 20%(중소기업 주식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예정신고 의무없이 확정신고 의무만 부담하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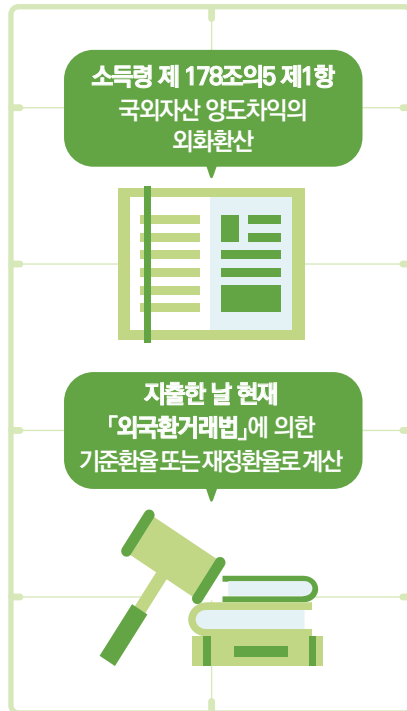
**참고**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구분	내용															
과세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sup>1)</sup>(소액주주 제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1) 코스피(1%·50억 원 이상<sup>2)</sup>), 코스닥(2%·50억 원 이상<sup>2)</sup>), 코넥스(4%·50억 원 이상<sup>2)</sup>)                2) '2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4. 1. 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0억 원</li> <li>•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li> </ul>															
소득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20. 1. 1.이후 양도분)</li> <li>•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li> </ul>															
양도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li> </ul>															
필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li> <li>•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li> </ul>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 원</li> <li>* 국내·국외주식 통산은 확정신고 기간에 하여야 함</li> </ul>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주식</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중소기업</td> <td>소액주주</td> <td>10%</td> </tr> <tr> <td>대주주</td> <td>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td> </tr> <tr> <td rowspan="2">중소기업 외</td> <td>소액주주</td> <td>20%</td> </tr> <tr> <td>대주주 1년 이상 보유</td> <td>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td> </tr> <tr> <td>대주주 1년 미만 보유</td> <td>30%</td> </tr> </tbody> </table>	구분	세율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구분	세율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주식 : 20% (중소기업 주식은 10%)</li> </ul>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주식 : 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li> <li>• 국외주식 : 확정 신고·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li> </ul>															

## 27 |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요?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은 소득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제5절 주식등의 양도 취득시기

## 28 |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주식등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대금청산일'이 됩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대하여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양도 및 취득시기

주식등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그 양도 및 취득시기는 거래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일반적인 거래

## 1)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대금청산일'이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합니다.(대법원2013두2034, 2014. 6. 12.)

## 2)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 4)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이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 다. 특수한 거래

### 1) 수 개의 자산 중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수 개의 자산 중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2) 주식을 교환한 경우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주식을 교환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차액의 청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청산한 날이 됩니다.

### 3)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낙찰받은 자가 매각조건에 따라 경·공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됩니다.

## 라. 취득시기의 의제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은 1986.1.1.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sup>9)</sup>은 제외됩니다.

### 9)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종류

- ① **(특정주식)**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과 해당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그 법인이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비중을 반영하여 계산한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 ②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사업으로서 일정 시설(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법인

## 제 6 절 주식등 양도소득세 계산

## 29 | 주식등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식등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 원)를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주식등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주식등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1)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계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양도비용 등)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주식등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이 양도소득금액이 됩니다.

## 2)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1) 에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1인당 250만 원 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3)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2) 에서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4) 납부할세액 계산

3) 에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신고·납부 등 의무 위반과 관련한 가산세를 더하면 총결정세액이 되고, 총결정세액에서 기 예정 신고납부세액, 기결정·경정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할세액이 됩니다.





참고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			세율
국내 주식등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20 ~ 25%
	중소기업외	소액주주	20%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20 ~ 25%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30%
국외주식등**			20%

\* 과세표준 3억 원 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10%의 세율 적용



참고

### 국내주식 합산신고 적용사례

- ▶ '23년 중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24. 5.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단위 : 천원)

구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5월(일반법인 대주주)	8월(일반법인 대주주)	
양도소득금액	150,000	200,000	35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47,500	200,000	347,500
세율 - 누진공제	20% - 0	20% - 0	25%* - 15,000
산출세액	29,500	40,000	71,875
기신고·결정세액	-	-	69,500
납부할세액	29,500	40,000	2,375

\*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 적용



참고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흐름도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취득가액 + 양도비용 등
=	양도차익(=소득금액)	•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기본공제	• 연간 250만 원
=	과세표준	
×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 10, 20, 20 ~ 25, 30%</li> <li>• 기타자산 : 6 ~ 45%</li> <li>• 비상업용 토지 50% 이상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 보유법인 : 16 ~ 55%</li> </ul>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	결정세액	
+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불성실 10 ~ 40%, 납부불성실 1일 22/100,000*</li> <li>* '22. 2. 15. 이후 신고·부과하는 부분부터</li> <li>• 기장불성실 10%(산출세액 없는 경우 0.07%)</li> </ul>
=	총결정세액	
-	기납부·고지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 기결정·경정세액
=	차가감 납부할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금액 분납가능(2개월)</li> <li>• 2천만 원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 분납가능(2개월)</li> </ul>

## 30 | 수차례에 걸쳐 다른 가액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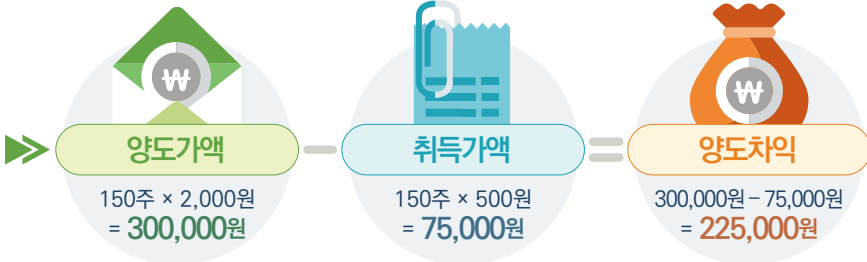
수회에 걸쳐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선입선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참고

수회에 걸쳐 취득한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 계산사례

▶ '22. 7. 2. 및 '22. 9. 15. 취득한 500주 가운데 '23. 2. 21. 150주(@2,000원)를 양도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



## 31 | 주식등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본공제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종합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의 기본공제금액은 해당연도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인지 국외자산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먼저 구분하고, 과세대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따라 부동산 등(토지·건물·부동산에관한권리 및 기타자산), 주식등(상장·비상장·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32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받는 건가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두 주식의 양도소득을 합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250만 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손익이 통산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참고**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 통산 및 기본공제 적용사례**

- ▶ '23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4. 5. 확정 신고·납부하는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국외주식	계
양도소득금액	342,500	342,500	100,000	442,500
기본공제	2,500	2,500	-*	2,500
과세표준	340,000	340,000	100,000	440,000
세율 - 누진공제	25% - 15,000	25% - 15,000	20%	20%, 25%
산출세액	70,000	70,000	20,000	90,000
기신고세액	-	-	-	70,000
납부할세액	70,000	-	-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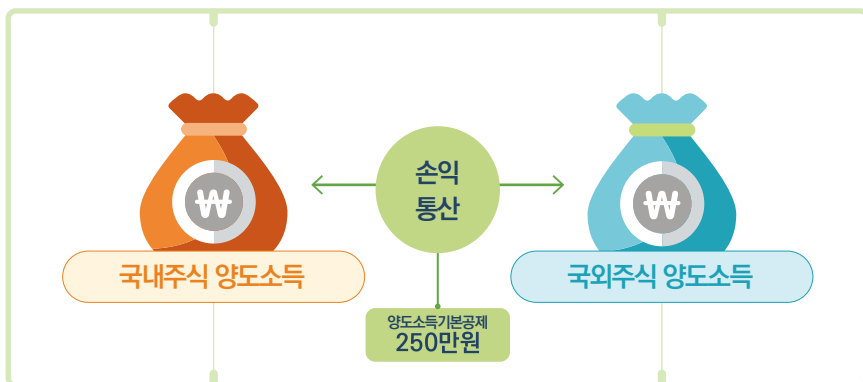
\* 국내-국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만 적용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



참고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시 양도자산 구분 및 사례

양도자산 구분		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국내 (소득법 §103)	부동산 (특정주식등 포함)	10,000,000	2,500,000
	주식등 (국외주식 포함)	10,000,000	2,500,000
	파생상품	10,000,000	2,500,000
	신탁수익권	10,000,000	2,500,000
국외 (소득법 §118의7)	부동산 (특정주식등 포함)	10,000,000	2,500,000
합계		50,000,000	12,500,000



### 33 | 여러 주식종목을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종목과 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혼재된 경우 이를 통산할 수 있나요?



여러 종목의 주식을 거래함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섞여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단, 과세대상인 주식에서 발생한 손익의 통산만 가능합니다.

국외주식에서 발생한 손익도 통산할 수 있으나,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은 확정신고 시에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양도차손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주식거래 유형별 손익통산 가능 여부 예시

과세대상 주식 간 손익통산만 가능				국내주식				국외주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대주주	소액주주				
	장내	장외							
국내주식	상장주식	대주주		○	X	○	○	○	
		소액주주	장내거래	X	X	X	X	X	
	장외거래		○	X	○	○	○		
	비상장주식		○	X	○	○	○		
국외주식				○	X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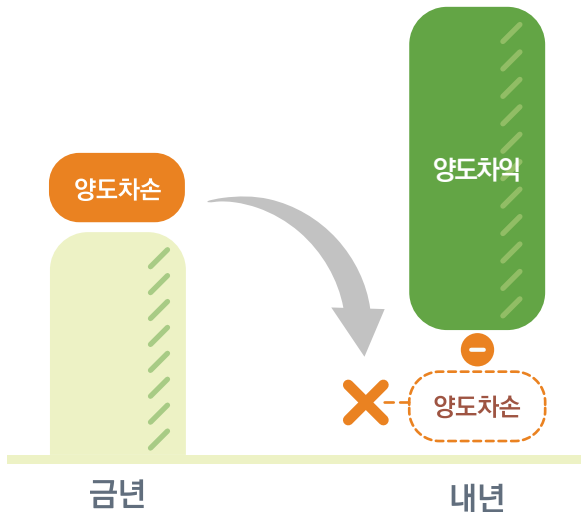
\*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의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 불가

## 제6절 주식등 양도소득세 계산

## 34 | 금년에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내년으로 이월하여 내년도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당해연도에 거래된 주식 간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통산 후 양도차손액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내년도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35 | 국내주식은 이익이 발생했는데 미국주식은 손실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미국주식의 손실을 통산할 수 있나요?



국외주식의 경우 주식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국내주식의 양도차익과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 의무만 있으므로 확정신고 시 국내주식의 양도차익과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인 주식에서 발생한 손익의 통산만 가능



참고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 적용사례

- ▶ '23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4.5월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국외주식 차손을 국내주식 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 손실금액을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은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차감 (만약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차감)

(단위 :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중소기업 대주주외)	국내주식(중소기업 대주주외)	국외주식	계
양도소득금액	110,000	110,000	△67,000	43,000
기본공제	2,500	-	-	2,500
과세표준	107,500	-	-	40,500
세율	10%	-	-	10%
산출세액	10,750	-	-	4,050
기신고세액	-	-	-	10,750
납부할세액	10,750	-	-	△6,700

제7절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

# 36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로써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순위가 달라져 당초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이 그 대상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 ~ 5. 31.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주식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대상


구분	상장법인 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 거래	장외거래
대주주	○	○	○	○
소액주주	X	○	○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X	○

**참고**  
주식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구분	예정신고기한	사례(양도일: '24. 2. 1.)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24. 8. 31.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4. 4. 30.
국외주식, 파생상품	예정신고의무 면제(확정신고 대상)	- (25. 5. 31.)

## 37 | 홈택스 등을 이용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 에 접속하여 도움자료 등을 이용해  
예정신고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홈택스 등을 이용한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도움자료 등을 이용해 예정신고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1) 맞춤형 도움자료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간편신고 서비스

거래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한 화면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납부 가능 시간

신고는 매일 06:00 ~ 24:00, 납부는 07:00 ~ 23:30까지 가능합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방법 안내

핵심




##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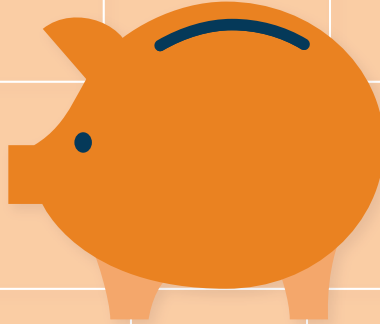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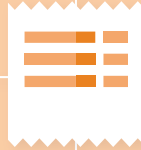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홈택스 —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li> <li>접근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접속 후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작성' 선택</li> <li>이용 시간 : 매일 06:00 ~ 24:00</li> <li>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li> </ul>
 손택스 —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li> <li>접근 방법 : 「아이폰 App Store」에서 '손택스' 검색 후 '받기' 「안드로이드 Play 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 앱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일반신고 (예정신고)' 선택</li> <li>이용 시간 : 매일 06:00 ~ 24:00</li> <li>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li> </ul>
 우편신고 · 방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li> <li>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li> </ul>

## 2.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구분	주요 내용
 <p> <b>홈택스</b>                      ·  <b>손택스</b>                      —                      PC·모바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택스)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li> <li>※ (손택스) '납부 고지·환급'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li> </ul> </li> <li>-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택스)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선택</li> <li>※ (손택스) '납부 고지·환급' ▶ '국세납부' ▶ '자진납부' 선택</li> </ul> </li> </ul> </li> <li>•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li> <li>•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li> </ul> </li> <li>• 페이코, 앱카드*, 삼성 카카오톡·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li> </ul> </li> <li>• 납부시간 : 07:00 ~ 23:30(연중 무휴)</li> </ul>
 <p> <b>금융결제원</b>                      —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a href="http://www.giro.or.kr">www.giro.or.kr</a>, <a href="http://www.cardrotax.or.kr">www.cardrotax.or.kr</a>)</li> <li>•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li> <li>•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li> <li>• 납부시간 : 00:30 ~ 23:30(연중 무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지로 정기점검 시간 등에는 납부 불가</li> </ul> </li> </ul>

구분	주요 내용
 <p>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li> <li>•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li> <li>•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li> <li>•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li> <li>•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금융기관에서 설치한 공과금 납부 전용 단말기</li> </ul>
 <p>세무서 — 무인수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li> </ul>

National Tax Service





## 제3장    주식등 거래 관련           기타 세금



## 38 |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외에 다른 세금도 납부해야 하나요?



주식등 양도 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외에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sup>10)</sup>는 대주주, 장외거래 여부 등에 관계없이 주식을 양도할 때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므로 양도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거래징수하지 않은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1.1.~ 6.30.)는 7.1.~ 8.31. 신고, 하반기(7.1.~ 12.31.)는 다음해 1.1.~ 2.28. 신고

**참고**

주식등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세율

구분		종전	'23. 1. 1. ~ '23. 12. 31.	'24. 1. 1. ~ '24. 12. 31.	'25. 1. 1.이후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	증권거래세	0.08%	0.05%	0.03%	0%
	농어촌특별세	0.15%	0.15%	0.15%	0.15%
	합계	0.23%	0.20%	0.18%	0.15%
코스닥시장		0.23%	0.20%	0.18%	0.15%
코넥스시장		0.10%	0.10%	0.10%	0.10%
K-OTC		0.23%	0.20%	0.18%	0.15%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장외거래		0.43%	0.35%	0.35%	0.35%

10) 증권거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거래분에 대하여만 부과.

제 1 절 주식등 거래 관련 증권거래세 등

# 39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나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b>취득세</b>	<b>등 록 번 호 세</b>	<b>레저세</b>	<b>지역자원시설세</b>	<b>담배소비세</b>
취득세 신고	등록분	레저세 신고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만출전신고 +
취득세 신고내역	연하분 +	레저세 신고내역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내역	만출신고 +
				담배소비세 신고 +
<b>주민주세</b>	<b>지방소득세</b>	<b>자동차세</b>	<b>세외수입</b>	<b>납세관리인</b>
종업원분 +	특별징수 +	주행분 +	증지수수료신고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
사업소분 +	종합소득분 +		증지수수료 신고내역	납세관리인 신고내역
건물사용명세서 +	양도소득분 +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
	법인소득분 +			

Wetax.go.kr 에서 신고해도 되고, 더 쉬운 방법은 홈택스에서 버튼 하나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b>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b>	· 전자신고 결과 조회 · 신고내용확인 진행상황 조회	· 신고부속서류 제출	·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	· 전자신고 삭제 요청
<b>부가가치세 신고</b>	· 일반과세자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간이과세자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대리납부 신고 · (모의계산)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 카드사 대리납부 신고
<b>종합소득세 신고</b>	· 모두제출/단순정비율 신고 · 증권인 기타소득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모의계산) 주택임대 종합과리세비교	· 일반신고(모든신고내역함) · 증권예납 추계역 신고 · 증권예납 고지 세액 조회	· 근로소득 신고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모의계산)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	·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 · 신고도움 서비스 · (모의계산) 주택 간주임대료
<b>양도소득세 신고</b>	· 확정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확정신고 · 모의계산	·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내역 양도자산 내역 조회

<table border="1"> <tr> <th>신고방법</th> <th>접수일시</th> <th>접수번호 (신고서보기)</th> <th>접수서류</th> <th>접수증</th> <th>납부서</th> <th>제출자 ID</th> <th>부속서류 제출여부</th> <th>지방소득세</th> <th>납부여부</th> <th>삭제 요청</th> </tr> <tr> <td>인터넷</td> <td>2023-12-..</td> <td>106-20-..</td> <td>접수서류 2종</td> <td>보기</td> <td>보기</td> <td>..</td> <td>Y</td> <td>신고이동</td> <td>Y</td> <td>이동</td> </tr> </table>	신고방법	접수일시	접수번호 (신고서보기)	접수서류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 ID	부속서류 제출여부	지방소득세	납부여부	삭제 요청	인터넷	2023-12-..	106-20-..	접수서류 2종	보기	보기	..	Y	신고이동	Y	이동
신고방법	접수일시	접수번호 (신고서보기)	접수서류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 ID	부속서류 제출여부	지방소득세	납부여부	삭제 요청												
인터넷	2023-12-..	106-20-..	접수서류 2종	보기	보기	..	Y	신고이동	Y	이동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신고내역을 조회하고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면 모든 신고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매우 쉽게 지방세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 40 | 국외 진출할 때 내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있다고 하는데?



이민 등 국외전출하는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등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sup>11)</sup>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 과세대상

2018. 1. 1. 이후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거주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외전출세가 과세됩니다.

가)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나) 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대주주)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소득령 §167의8①) 등을 준용

### 2) 납세의무성립일 : 국외전출일

### 3) 과세표준

국외전출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간주양도가액*} - \text{필요경비(취득가액 등)} - \text{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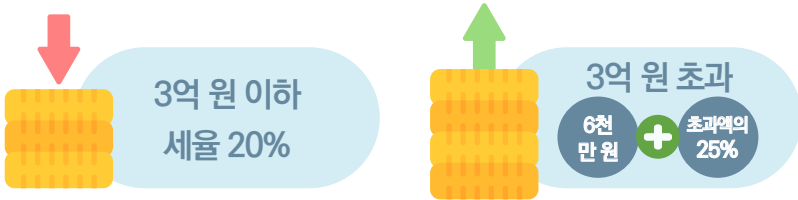


\* 출국일 당시의 시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장주식은 기준시가,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 또는 기준시가

11) 소득법 §118의9

#### 4) 세율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6천만 원 + (3억 원 초과액 × 25%)



#### 5) 세액공제

추후 국내주식을 실제 양도하는 경우 아래 세액을 공제(既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방식)합니다.

##### 가) 조정공제

실제 양도시 양도가액이 국외전출시보다 하락한 경우 가격하락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text{국외전출시 간주 양도가액} - \text{실제양도가액}) \times \text{세율}(20 \sim 25\%)$$

#####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주한 국가에 납부한 세금 중 일정금액을 공제(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이주한 국가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합니다.

$$\text{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times \frac{(\text{간주양도가액 or 실제양도가액} - \text{필요경비})}{(\text{실제양도가액} - \text{필요경비})}$$

##### 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국내에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관련 세액을 공제(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한도)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상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6) 신고 및 납부

### 가) 주식 보유현황 신고 및 가산세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미신고(과소신고) 시 액면(출자)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나) 신고·납부 및 가산세

국외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만, '19. 1. 1. 이후 국외전출 전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다음 연도 5월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 등을 부과합니다.

## 7)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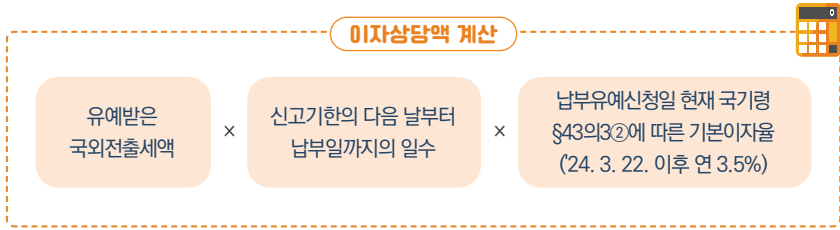
### 가) 납부유예 신청 및 납부유예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1) 국세징수법 §29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 (2)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 나) 납부유예받은 세액의 납부

국외전출세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로부터 5년(유학 10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국외 전출자(상속의 경우 상속인)가 5년 내 재전입, 거주자에게 증여, 상속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세액의 환급 또는 납부유예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41 |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상장주식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수증자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주식등 증여 시 납세의무

상증법 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증법 상 증여재산공제(미성년자가 아닌 자녀에게 증여 시 5천만 원) 한도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참고 증여재산공제 개요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① 배우자, ② 직계 존속, ③ 직계비속, ④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10년간 합산한 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참고

##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6억 원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5천만 원	1천만 원	없음

참고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4.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 공제 및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 **(출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및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입양신고일
- **(공제한도)** Min(혼인 증여재산공제 +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주식등 증여 시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 발생





## 42 |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경우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세법이 정하고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종류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이 상이합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주식등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 1) 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시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바로 파악할 수 없고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야 해당 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시장에서 거래된 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합니다.

#### 참고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개요

- ▶ 일반적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비율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 ▶ 2018. 4. 1. 이후에는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43 | 주식등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식등 수증 시 증여세는 먼저 ①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②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하고, 해당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③증여세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이후 해당 증여세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④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주식등 수증 시 증여세의 계산방법

주식등 수증 시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1) 증여재산가액 산정

상증법에 따른 시가 또는 시가로 보는 가액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2) 증여세 계산

###### ①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증여재산가액에 해당 증여일 이전에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해당 동일인에는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 ③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②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④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③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⑤ 납부할세액 계산

④ 증여세 산출세액에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하고 세액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참고

####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가산

- ▶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동일인에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을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 (예시) 2016. 6.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의 주식을 증여받고, 2023. 5.에 어머니로부터 2억 원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합산 ▶ **5억 원**



참고

주식등 증여 시 증여세 계산흐름도

-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 등
  
-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
  
- +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이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증여재산 공제한도액	6억 원	5천만 원 (수증자가미성 년자이면 2천만 원)	5천 만 원	1천 만 원	없음

※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간의 누계한도액임
  
- 감정평가수수료

※ 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음
  
- =  
증여세과세표준
  
- X  
세율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10억원이하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	-	1천만 원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4억 6천만 원
  
- =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 30% 또는 40%) 함. 단,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외
  
- 세액공제·감면세액

- 납부세액공제 :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
  -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세액의 3% 공제
  
- 연부연납·물납

※ 증여세는 물납불가
  
- =  
자진납부할 세액

## 44 |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제2절 주식등 증여 관련 증여세

## 45 |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에 대해 알고 싶어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세법상 가산세 제도

#### 1) 신고불성실가산세

예정 및 확정 무·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국기법 §47의2, §47의3)

$$\text{가산세액} = \text{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times \text{가산세율}$$

#### 가)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은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당초 신고세액 등을 차감한 후 가산세를 가산하기 전 금액으로서, 세법에 따른 이차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고 초과신고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나) 가산세율

일반과소신고(10%), 일반무신고(20%), 부당 무·과소신고(40%)

### 다) 예정 및 확정 무·과소신고 가산세 계산방법

- ① 예정 무·과소신고 가산세는 양도 건별로 각각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② 확정 무·과소신고 가산세는 소득금액 합산으로 납부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text{확정 무(과소)신고가산세} = (\text{㉞} - \text{㉝}) \times 10\%, 20\%, 40\%$$

㉝ : 예정 무(과소)신고분 납부세액 합계  
 ㉞ : 소득금액 합산분 납부세액

### 2) 납부지연가산세

예정 및 확정 무·과소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 적용을 배제합니다.(국기법 §47의4)



$$\text{가산세액} = \text{무(과소)납부세액} \times \text{미납일수}^1 \times 22/100,000^2$$

1) 미납일수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2) 22. 2. 15. 개정(국기령 §27조의4), 종전 25/100,000

### 3) 기장불성실가산세

#### 가)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법인(중소기업 포함)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고 증명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 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로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봅니다.(소득법 §115①)

참고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소득령 §178)

- ▶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 일자·거래수량·단가·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거래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함

### 나) 가장 불성실가산세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가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액

=

산출세액\*

×

$\frac{\text{가장누락소득금액}}{\text{양도소득금액}}$

×

10%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거래금액 × 7/10,000

### 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가장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 적용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가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하며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합니다.(국기법 §47의2⑥)

## 4) 가산세 감면(국기법 §48)

###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구 분	신고 시기	감면율	감면제외	
법정 신고 기한	수정신고	1개월 이내	90%	경정할 것을 알고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예정 신고기한*	수정신고	확정신고기한	50%	
	기한후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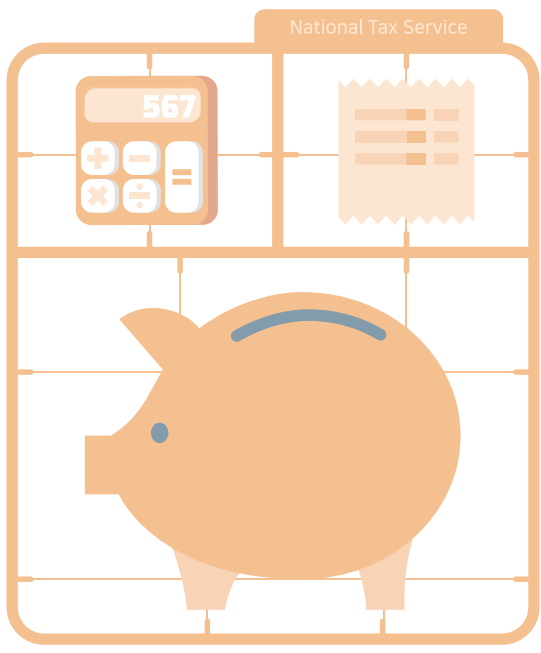
\* '20.1.1.이후 기한 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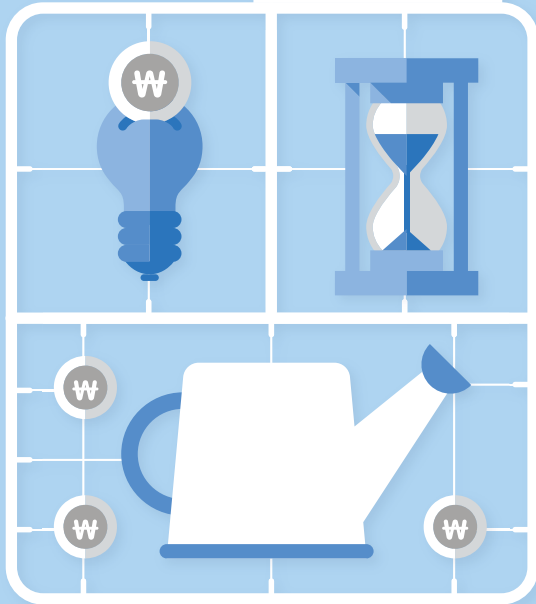
## 나)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50%





National Tax Service





## 제4장

# 파생상품 양도소득의 이해

## 46 | 파생상품이란 무엇인가요?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인 주식, 채권, 달러, 금 등의 가치가 변동됨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합니다.

구분	종류	내용
거래 (계약) 형태	선물	미래 일정시점에 특정자산을 약정가격으로 사거나 팔기로 하는 거래(계약)
	옵션	미래 일정시점에 약정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사거나 파는 거래(계약)
	스왑	미래 일정시점에 특정자산 및 부채를 정해진 조건으로 교환하는 거래(계약)
	차액결제거래 (CFD)	주식 등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
거래 장소	장내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조건을 표준화하고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신용위험이 없음
	장외	거래소 외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하나 신용위험이 존재함



### 가. 파생상품의 개념

#### 1) 선물·선도(Futures)

##### 가) 정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선도는 보통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하며, 선물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나) 선물의 특징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신용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증거금을 납부하고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일일정산하며, 옵션과는 달리 거래 체결 시 거래대금(프리미엄)을 수수하지 않습니다.



### 참고 위탁증거금 제도

매일의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투자자의 증거금에 가감하며 증거금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 시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납입(margin call)하게 함으로써 증거금이 항상 일정수준(개시증거금)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결제이행 담보 제도입니다.



## 2) 옵션(Options)

### 가) 정의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미래의 특정 시점 또는 특정 기간 동안에 정해진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사거나 파는 거래를 말합니다.

### 나) 옵션의 특징

옵션은 기초자산 가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옵션을 매수한 경우 손실금액은 옵션가격(Premium)으로 한정되며, 옵션을 매도한 경우 이익은 옵션가격으로 한정되나 기초자산 가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 손실은 무한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스왑(Swap)

### 가) 정의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거래당사자 간에 미리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미래의 일정 시점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4)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 가) 정의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으로서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 나) CFD의 특징

차액결제거래는 적은 증거금으로 거래(레버리지 효과)하며, 종목별 증거금율에 차등이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으로도 보유가 가능하므로 공매도 효과가 있고, 주가 하락이 기대될 때 헤지(hedge)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선물과는 달리 별도의 만기가 없습니다. 이러한 CFD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종목의 거래금액에 증거금율을 곱한 금액의 위탁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47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은 무엇이 있나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이익이 있는 거주자인 개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국내	<p>주가 지수<sup>1)</sup>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옵션(미니포함), 주식워런트증권(ELW<sup>2)</sup>, 차액결제거래(CFD<sup>3)</sup>)</p> <p>1) 증권시장에서 주식시세 현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예시. 코스피200, 코스피200섹터지수, 배당지수, 코스닥150, KRX300 등)</p> <p>2) 주식 및 주가 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Call) 팔(Put)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유가증권</p> <p>3) 실제 기초자산(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p>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의 일부 포함)



참고

### 국내·외 과세대상 파생상품 주요 기초자산

기초자산	국내	국외	국내·외
	장내		장외
지수	코스피200 미니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	S&P500(미국), DAX(독일) NIKKEI225(일본) H-Share(홍콩) ...	주가 지수*
통화	-	USD, JPY, EUR...	
금리	-	유로달러, T-note, T-bond ...	○
상품	-	구리, 금, 콩, 옥수수, 대두 원유, 천연가스	○
기타	-	탄소배출권, 날씨...	○

\*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에 한함(19. 4. 1. 양도분부터)



## 48 | 파생상품의 양도·취득시기 및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 ▶ 양도·취득시기

파생상품의 경우 주식과 같이 거래대금의 청산은 결제일\*에 이루어지므로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체결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이 됩니다.

\* **지수관련 선물·옵션(미니 포함) 결제일** : 체결일의 다음날(T+1), 주식워런트증권(T+2)  
**국외파생상품** : 상품에 따라 다양한 결제일 존재(T+1, ... T+90 등)

### ▶ 양도·취득가액

양도·취득가액은 매도·매수거래에 따른 결제금액이 됩니다.



### 참고 거래 유형별 양도·취득 시기 및 가액

#### 1. 선물 매수(선매수 후매도)

- ① (신규 진입) '22. 12. 26. 코스피200 선물을 270p에 10계약 매수
- ② (반대거래) '23. 1. 6. 해당 선물가격이 272p로 상승하여 전량 매도

가액	(매수) 취득가액 675백만 원 (270p × 250,000원 × 10계약)	(매도) 양도가액 680백만 원 (272p × 250,000원 × 10계약)
시기	취득일 '22. 12. 26.	양도일 '23. 1. 6.
양도차익	680백만 원 - 675백만 원 = 5백만 원	

#### 2. 선물 매도(선매도 후매수)

- ① (신규 진입) '22. 12. 26. 코스피200 선물을 270p에 10계약 매도
- ② (반대 거래) '23. 1. 6. 상승장 전환으로 손실 줄이기 위해 272p에 전량 매수

가액	(매도) 양도가액 675백만 원 (270p × 250,000원 × 10계약)	(매수) 취득가액 680백만 원 (272p × 250,000원 × 10계약)
시기	취득일 '22. 12. 26.	양도일 '23. 1. 6.
양도차익	680백만 원 - 675백만 원 = 5백만 원	

※ 신고대상연도 '23년 ▶ 취득일('22. 12. 26.)이 속하는 '22년도가 아님에 유의

## 49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별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파생상품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은 과세대상 파생상품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생상품의 양도차익 계산 시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선입선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파생상품 양도차익의 산정

#### 1) 선물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아래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아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 가) 선물의 손익계산

$$= ( A \times C + B \times C ) \times D$$



-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 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
- C 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이면 -1
- D 자본시장법 §393②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거래승수")

\* 매수 또는 매도포지션을 취한 상태에서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계약수

\*\*1계약의 거래 단위 또는 규모(예 : 코스피200 선물·옵션 25만 원)

나) 차감하는 비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위탁매매수수료

(2)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영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영 제159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참고**  
**계산 사례**

▶ **(매수거래)** 주가지수 상승을 예상한 A씨, 코스피200 선물을 270p에 10계약 매수  
→ 다음 날 지수 상승으로 272p에 10계약 매도

▶ **(매도거래)** 주가지수 하락을 예상한 B씨, 코스피200 선물을 270p에 10계약 매도  
→ 예상과 달리 지수 상승하여 272p에 전량 매수(손절매)

**<손익계산>**

① A :  $\{ 270p \times (-1) + 272p \times (1) \} \times 25\text{만 원} \times 10\text{계약} = 5\text{백만 원 이익}$

② B :  $\{ 270p \times (1) + 272p \times (-1) \} \times 25\text{만 원} \times 10\text{계약} = \Delta 5\text{백만 원 손실}$



**2) 옵션**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아래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아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가) 옵션의 손익계산**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 ( A \times C + B \times C ) \times D$



-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 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 거래승수



참고

**콜옵션 계산 사례**

- ▶ **(매수거래)** 주가지수 상승을 예상한 A씨, 코스피200을 270p에 살 수 있는 콜옵션 10계약을 2p(프리미엄)를 지급하고 매수  
→ 다음 날 콜옵션 가격이 4p로 상승하여 매도
- ▶ **(매도거래)** 주가지수가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 B씨, 코스피200을 270p에 살 수 있는 콜옵션 10계약을 2p(프리미엄)을 받고 매도  
→ 예상과 달리 콜옵션 가격이 4p로 상승하여 매수(손절매)

〈손익계산〉

- ① A :  $\{2p \times (-1) + 4p \times (1)\} \times 25\text{만 원} \times 10\text{계약} = 5\text{백만 원 이익}$
- ② B :  $\{2p \times (1) + 4p \times (-1)\} \times 25\text{만 원} \times 10\text{계약} = \Delta 5\text{백만 원 손실}$



참고

**풋옵션 계산 사례**

- ▶ **(매수거래)** 주가지수 하락을 예상한 A씨, 코스피200을 270p에 팔 수 있는 풋옵션 10계약을 2p(프리미엄)를 지급하고 매수  
→ 다음 날 풋옵션 가격이 4p로 상승하여 매도
- ▶ **(매도거래)** 주가지수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 B씨, 코스피200을 270p에 팔 수 있는 풋옵션 10계약을 2p(프리미엄)를 받고 매도  
→ 예상과 달리 풋옵션 가격이 4p로 상승하여 매수(손절매)

〈손익계산〉

- ① A :  $\{2p \times (-1) + 4p \times (1)\} \times 25\text{만 원} \times 10\text{계약} = 5\text{백만 원 이익}$
- ② B :  $\{2p \times (1) + 4p \times (-1)\} \times 25\text{만 원} \times 10\text{계약} = \Delta 5\text{백만 원 손실}$





###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 [ \{ ( A - B ) \times C \} \text{와 } 0 \text{ 중 큰 금액} - D ] \times E \times F$$

-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 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 C 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 D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E 거래승수
- F 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나) 차감하는 비용 : 상기 선물의 경우와 동일

### 3) 주식워런트증권

환매,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양도 또는 소멸된 증권에 대하여 각각 매수 당시 증권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아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 가) ELW의 손익계산



#####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 \text{증권의 매도가격} - \text{증권의 매수가격}$$



#### 콜워런트증권 계산 사례

- ▶ (매수거래) 주가지수 상승을 예상한 A씨, 코스피200을 270p에 살 수 있는 주식 워런트증권(ELW) 10주를 주당 415원에 매수  
→ 다음 날 ELW 가격이 600원으로 상승하여 매도
- ▶ (매도거래) 투자자는 매도거래 불가(선매수, 후매도만 가능)

<손익계산>

$$\textcircled{1} A : ( 600\text{원} - 415\text{원} ) \times 10\text{주} = 1,850\text{원 이의}$$



참고

풋워런트증권 계산 사례

- ▶ **(매수거래)** 주가지수 하락을 예상한 A씨, 코스피200을 270p에 팔 수 있는 주식 워런트증권(ELW) 10주를 주당 415원에 매수  
→ 다음 날 ELW 가격이 600원으로 상승하여 매도
- ▶ **(매도거래)** 투자자는 매도거래 불가(선매수, 후매도만 가능)

〈순익계산〉

① A : ( 600원 - 415원 ) × 10주 = 1,850원 이익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 { ( A - B ) × C × D } 와 0 중 큰 금액 - E

-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 증권 행사가격
- C 증권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 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율
- E 증권의 매수가격

참고

콜워런트증권 계산 사례

- ▶ **(매수거래)** 주가지수 상승을 예상한 A씨, 코스피200을 270p에 살 수 있는 주식워런트 증권(전환비율 100원) 10주를 주당 415원에 매수하고 만기까지 보유
- ▶ **(매도거래)** 투자자는 매도거래 불가(선매수, 후매도만 가능)
- ▶ **(만기도래)** 상황 1. 만기 시 코스피200이 276p인 경우  
                  상황 2. 만기 시 코스피200이 264p인 경우



〈손익계산 -상황 1〉

- ① A :  $\text{Max} \{ (276p - 270p) \times (1) \times 100, 0 \} \times 10\text{주} - 4,150\text{원} = 1,850\text{원 이익}$   
 \* 간편 계산(별해)  $(6p \times 100\text{원} - 415\text{원}) \times 10\text{주} = 1,850\text{원}$
- ② (매도자 : 증권사) A의 권리행사로 1,850원 손실

〈손익계산 -상황 2〉

- ① A : 코스피200을 264p에 살 수 있는데 270p에 사면 손해이므로 권리포기  
 •  $\triangle 415\text{원} \times 10\text{주} = \triangle 4,150\text{원 손실}$
- ② (매도자 : 증권사) A의 권리포기로 당초 받은 주당 415원 이익  
 •  $415\text{원} \times 10\text{주} = 4,150\text{원 이익}$



참고

풋워런트증권 계산 사례

- ▶ (매수거래) 주가지수 상승을 예상한 A씨, 코스피200을 270p에 살 수 있는 주식워런트 증권(전환비용 100원) 10주를 주당 415원에 매수하고 만기까지 보유
- ▶ (매도거래) 투자자는 매도거래 불가(선매수, 후매도만 가능)
- ▶ (만기도래) **상황 1.** 만기 시 코스피200이 276p인 경우  
                   **상황 2.** 만기 시 코스피200이 264p인 경우



〈손익계산 -상황 1〉

- ① A :  $\text{Max} \{ (276p - 270p) \times (1) \times 100, 0 \} \times 10\text{주} - 4,150\text{원} = 1,850\text{원 이익}$   
 \* 간편 계산(별해)  $(6p \times 100\text{원} - 415\text{원}) \times 10\text{주} = 1,850\text{원}$
- ② (매도자 : 증권사) A의 권리행사로 1,850원 손실

〈손익계산 -상황 2〉

- ① A : 코스피200을 264p에 살 수 있는데 270p에 사면 손해이므로 권리포기  
 •  $\triangle 415\text{원} \times 10\text{주} = \triangle 4,150\text{원 손실}$
- ② (매도자 : 증권사) A의 권리포기로 당초 받은 주당 415원 이익  
 •  $415\text{원} \times 10\text{주} = 4,150\text{원 이익}$

#### 4) 차액결제거래\*

계좌별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

\* 과세대상 CFD(contract for difference) :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 거래 약정가격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으로서 주식등,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 상장지수 증권 가격과 연계하는 장외 파생상품



$$= ( A \times C + B \times C ) + D - E$$

-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이외의 계약에 따른 지급받는 소득
-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이 규칙 제5항을 준용)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 참고 파생상품의 양도차익 계산 요약

구분	선물거래	옵션거래*
양도 가액	(매도) 계약 체결일의 약정가액 (매수) 반대매매일(또는 만기일)의 결제가액	(매도) 수취프리미엄 (매수) 반대매매일(또는 만기일)의 결제가액
취득 가액	(매도) 반대매매일(또는 만기일)의 결제가액 (매수) 계약 체결일의 약정가액	(매도) 반대매매일(또는 만기일)의 결제가액 (매수) 지급프리미엄

\* 최종결제일이 도래하여 권리행사(포기)시 양도·취득가액 계산식이 달라짐





참고

### 선물·콜옵션 양도차익의 간편 계산법

선물·콜옵션·풋옵션 구분 없이, 거래방향(매수거래, 매도거래)이나 만기도래 여부와도 상관없이 매수인 경우 취득가액, 매도인 경우 양도가액

## 1. 선물

- ▶ **(매수거래)** 주가지수 상승을 예상한 A씨, 코스피200 선물을 270p에 10계약 매수  
→ 다음 날 지수 상승으로 272p에 10계약 매도
- ▶ **(매도거래)** 주가지수 하락을 예상한 B씨, 코스피200 선물을 270p에 10계약 매도  
→ 예상과 달리 지수 상승하여 272p에 전량 매수(손절매)

〈손익계산〉

- ① A :  $(272p - 270p) \times 25\text{만 원} \times 10\text{계약} = 5\text{백만 원 이익}$
- ② B :  $(270p - 272p) \times 25\text{만 원} \times 10\text{계약} = \triangle 5\text{백만 원 손실}$



## 2. 콜옵션

- ▶ **(매수거래)** 주가지수 상승을 예상한 A씨, 코스피200을 270p에 살 수 있는 콜옵션 10계약을 2p(프리미엄)를 지급하고 매수  
→ 다음 날 콜옵션 가격이 4p로 상승하여 매도
- ▶ **(매도거래)** 주가지수가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 B씨, 코스피200을 270p에 살 수 있는 콜옵션 10계약을 2p(프리미엄)를 받고 매도  
→ 예상과 달리 콜옵션 가격이 4p로 상승하여 매수(손절매)

〈손익계산〉

- ① A :  $(4p - 2p) \times 25\text{만 원} \times 10\text{계약} = 5\text{백만 원 이익}$
- ② B :  $(2p - 4p) \times 25\text{만 원} \times 10\text{계약} = \triangle 5\text{백만 원 손실}$



### 3. 풋옵션

- ▶ **(매수거래)** 주가지수 상승을 예상한 A씨, 코스피200을 팔 수 있는 풋옵션 10계약을 2p(프리미엄)를 지급하고 매수  
→ 다음 날 풋옵션 가격이 4p로 상승하여 매도
- ▶ **(매도거래)** 주가지수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 B씨, 코스피200을 270p에 팔 수 있는 풋옵션 10계약을 2p(프리미엄)를 받고 매도  
→ 예상과 달리 풋옵션 가격이 4p로 상승하여 매수(손절매)



〈손익계산〉

- ① A :  $(4p - 2p) \times 25\text{만 원} \times 10\text{계약} = 5\text{백만 원 이익}$
- ② B :  $(2p - 4p) \times 25\text{만 원} \times 10\text{계약} = \Delta 5\text{백만 원 손실}$

### 4. 콜옵션 만기도래

- ▶ **(매수거래)** 주가지수 상승을 예상한 A씨, 코스피200을 270p에 살 수 있는 콜옵션 10계약을 2p(프리미엄)를 지급하고 매수하여 만기까지 보유
- ▶ **(매도거래)** 주가지수가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 B씨, 코스피200을 270p에 살 수 있는 콜옵션 10계약을 2p(프리미엄)를 받고 매도하여 만기까지 보유
- ▶ **(만기도래) 상황 1.** 만기 시 코스피200이 274p인 경우  
**상황 2.** 만기 시 코스피200이 266p인 경우



〈손익계산-상황 1〉

- ① A :  $\{4p(274p - 270p) - 2p\} \times 25\text{만 원} \times 10\text{계약} = 5\text{백만 원 이익}$
- ② B :  $\{2p - 4p(274p - 270p)\} \times 25\text{만 원} \times 10\text{계약} = \Delta 5\text{백만 원 손실}$

〈손익계산-상황 2〉

- ① A : 코스피200을 266p에 살 수 있는데 270p에 사면 손해이므로 권리포기
  - $\Delta 2p \times 25\text{만 원} \times 10\text{계약} = \Delta 5\text{백만 원 손실}$
- ② B : 매수자의 권리포기로 당초 받은 2p 이익
  - $2p \times 25\text{만 원} \times 10\text{계약} = 5\text{백만 원 이익}$

#### 4. 풋옵션 만기도래

- ▶ **(매수거래)** 주가지수 하락을 예상한 A씨, 코스피200을 270p에 팔 수 있는 풋옵션 10계약을 2p(프리미엄)를 지급하고 매수하여 만기까지 보유
- ▶ **(매도거래)** 주가지수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 B씨, 코스피200을 270p에 팔 수 있는 풋옵션 10계약을 2p(프리미엄)를 받고 매도하여 만기까지 보유
- ▶ **(만기도래) 상황 1.** 만기 시 코스피200이 266p인 경우  
           **상황 2.** 만기 시 코스피200이 274p인 경우



〈손익계산-상황 1〉

- ① A :  $\{4p(270p - 266p) - 2p\} \times 25\text{만 원} \times 10\text{계약} = 5\text{백만 원 이익}$
- ② B :  $\{2p - 4p(270p - 266p)\} \times 25\text{만 원} \times 10\text{계약} = \Delta 5\text{백만 원 손실}$

〈손익계산-상황 2〉

- ① A : 코스피200을 274p에 팔 수 있는데 270p에 팔면 손해이므로 권리포기
  - $\Delta 2p \times 25\text{만 원} \times 10\text{계약} = 5\text{백만 원 손실}$
- ② (매도자) 매수자의 권리포기로 당초 받은 2p 이익
  - $2p \times 25\text{만 원} \times 10\text{계약} = 5\text{백만 원 이익}$

## 50 | 파생상품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파생상품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대상인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통산한 후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 51 | 주식워런트증권(ELW)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지분증권인 주식등의 양도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 지?



주식워런트증권(코스피200·코스닥150 연계)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 증권에 해당하지만 소득령 제159조의2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만 통산합니다.

즉, 파생상품 외의 주식등 손익과는 통산할 수 없습니다.



## 52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율은 주식과 다른가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율은 주식등 양도소득에 적용하는 세율과 다르며, 1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 기본세율은 20%이나 탄력세율(10%)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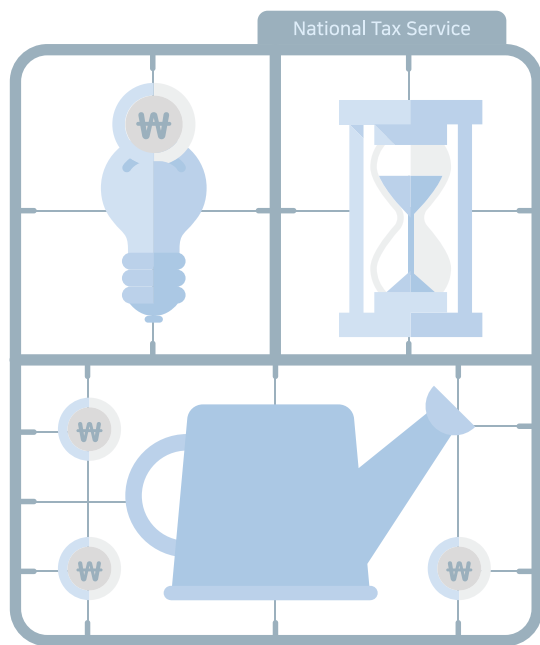


## 53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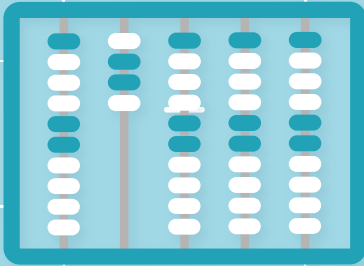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는 없으며,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 1. 부터 5. 31. 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National Tax Service





## 제5장

# 배당소득의 이해<sup>12)</sup>

12) 배당소득의 이해는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발간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책자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54 | 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인 개인입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도 개인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입니다.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본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이 확정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소득종류별로 과세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소득세의 과세체계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방법 등 소득세 체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인 개인입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도 '개인'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개인")가 됩니다.

##### 2) 소득세의 과세방법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자기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이 확정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소득금액)이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법은 개인의 소득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소득종류별로 과세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구분(분류과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55 | 종합소득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종합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합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종합소득의 과세방법

종합소득은 개인별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중 일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나.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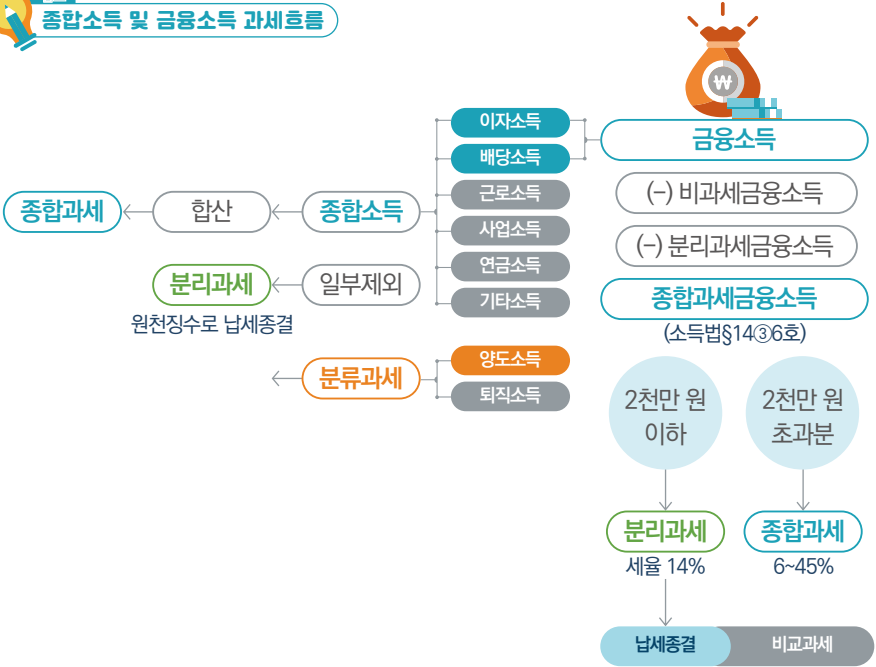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 단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sup>13)</sup>

-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
- ③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④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⑤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13) 소득법 §57

- ⑥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⑦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⑧ 퇴직소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사업소득만 있는 자
- ⑨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 ⑩ 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 ⑪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등

**참고**  
**종합소득 및 금융소득 과세흐름**



**합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 56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관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개인이 사업자금,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나 배당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 1) 이자소득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2) 배당소득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sup>14)</sup>

14) 소득법 §14③6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합니다.<sup>15)</sup>

결국 일부 높은 수준의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금융회사등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참고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체계

#### ①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② 비과세금융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저축성보험차익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개인연금저축 이자·배당,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배당(1명당 5천만 원 이하), 농·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이자, 녹색예금·채권 이자,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 경과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이자
-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조합 등 예탁금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1억 원 이하)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녹색투자신탁 등 배당, 저축지원을 위한 조특법에 따른 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까지



#### ③ 분리과세금융소득

-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신청(30%), 비실명금융소득(45, 9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7년(15년) 이상 사회기반시설채권이자(14%), 영농·영어 조합법인(1천2백만 원 초과분)으로부터 받는 배당(5%), 농업회사법인 출자 거주자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14%),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배당(5%, 14%), 세금우대 종합저축 이자·배당(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비과세 한도(200만 원, 40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 등



#### ④ 종합과세금융소득

- 1) ① - (② + ③)의 금액 중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과세됨
  - 2) ① - (② + ③)의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 국내외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 그 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15) 소득법 §62



## 57 | 배당소득세가 궁금해요?



배당소득이란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그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법에서 열거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도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유형별 포괄주의)하고 있습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배당소득세 개요

소득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배당소득의 범위 >

-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③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 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④ 의제배당(擬制配當)
- ⑤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 ⑥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⑦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⑧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간주배당)
- ⑩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⑪ 상기 ①부터 ⑨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⑫ 상기 ①부터 ⑪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나. 의제배당

의제배당이란 현금 또는 주식을 신규 발행하여 주는 것과 같이 실질배당의 형식은 취하지 않았지만, 법인이 그 이익을 분배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甲주주가 A법인 주식 1천주를 1천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A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면서 甲주주가 그 합병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경우, 甲주주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1천만 원(2천만 원 - 1천만 원)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법 제17조 제2항에서 의제배당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각 호에서 정하는 의제배당액을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제배당의 범위〉

- 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②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㉗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③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주·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㉗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 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㉙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⑤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기②의 ㉗, ㉘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⑥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58 | 비과세, 감면 등 과세되지 않는 배당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거나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배당소득세의 비과세·감면 및 분리과세

### 1) 비과세되는 배당소득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비과세)하는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우리나라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조특법§88의4)
- ② 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조특법§88의4)
- ③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조특법§88의5)
- ④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2)
- ⑤ 녹색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3①, 2014. 1. 1. 삭제)
- ⑥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
- ⑦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까지의 금액(조특법§91의18)
- ⑧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득법§12 1호)
- ⑨ 청년도약계좌 배당소득 (조특법§91의2)

## 2) 면제되는 배당소득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66)
- ② 영어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67)
- ③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의 배당(조특법§68)
- ④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2)

## 3)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되는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66 ③)
- ② 영어조합법인의 배당(조특법§67 ③)
- ③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7의6)
- ④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7의7)
- 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89)
-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5)
- ⑦ 재외동포 전용투자신탁 등의 배당(조특법§91의12)
- ⑧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배당(소득법§14)
- ⑨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소득법§14)
- ⑩ 비실명금융소득(소득법§129)
- 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 ⑫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배당소득(조특법§26의2)
- 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배당소득(조특법§27)

# 59 | 배당소득이 발생한 날은 언제가 되는 건가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배당을 지급받은 날입니다. 다만, 배당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배당소득의 종류 및 수입시기

구분	배당소득의 종류	수입시기(귀속시기)
실지배당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는 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익을 지급받은 날(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유사배당(수익분배성격) 배당소득부 결합 파생상품	그 지급을 받는 날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	과세연도 종료일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이익을 지급받은 날(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의제배당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감자 결의일, 퇴사·탈퇴일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분할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자본전입결의일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 60 | 배당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당소득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배당소득(총수입금액)이 곧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합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시 배당가산(Gross-up)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text{배당소득금액} = \text{배당소득} + \text{배당소득} \times \text{배당가산율 (11/100)}$$

이 경우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 ③ 의제배당
-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법인법 제51조의2 또는 조특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로부터 받는 배당

한편, 배당가산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도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소각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을 말함
- ② 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③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의한 의제배당
-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에 아래 산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

×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100으로 하며,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한다.



## 61 | 상장주식 보유 시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나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됩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1)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금액에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가) 일반적 실명의 배당소득 : 14%

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다)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시기 의제 포함)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익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4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 : 90%

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 200(400)만 원 초과금액 (조특법 §91의18) : 9%

## 2) 원천징수시기

### 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실지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합니다.

### 나)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일정한 경우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법§131)

- (1)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11. 1. 부터 12. 31. 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2)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가) 법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나) 법인법에 따라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3) **의제배당(소득령§191)**

소득령 제46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날(수입시기 참조)

(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5)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6) **그 밖의 배당소득**

「소득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각 호에 규정된 날



참고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인제(소득령 §191 제1호 인제배당)**

- ①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②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③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 ④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 62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종합과세 방법은?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합니다.

종합과세 여부 판단을 위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의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합니다.

-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준금액 이하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합니다.

다만,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점으로 한 급격한 세부담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소득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종합과세방식과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리과세 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종합과세 여부 판단을 위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의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합니다.



## 63 |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등의 계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1) 산출세액의 계산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text{산출세액} = \left( \begin{array}{c} \text{〈 2천만 원 까지〉} \\ \text{금융소득 2천만 원} \times 14\%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c} \text{〈 2천만 원 초과〉} \\ \text{종합소득 과세표준} \times \text{기본세율} \end{array} \right)$$

### 2)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공제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2천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 ▶ 따라서 전체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 3)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 가) 비교과세제도의 의의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지 않지만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소득세율 구조 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산출세액이 오히려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어질 수 있는데, 이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려는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계산특례규정(비교과세제도)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

#### 금융소득 비교과세 취지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 보다 적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원천징수세액보다 세부담이 적게 되는 모순 방지) 종합소득세로 과세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최소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과세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나) 일반적인 경우의 비교과세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각각 다르게 계산합니다.

이 경우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1) 금융소득이 2,000만 원(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와 (나) 중 큰 금액

(가) 다음 ①과 ②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종합과세 방식)

①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6 ~ 42%)

②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 × 원천징수세율(14%)

\* Gross-up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Gross-up금액을 가산한 금액(2천만 원 초과부분만 Gross-up을 적용)

(나) 다음 ①과 ②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분리과세 방식)

①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14%, 비영업대금이익 25%)

②\*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다만, ②의 세액이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및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종합소득 비교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함

(2)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위에 (나) 분리과세 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합니다.

## 64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 65 | 배당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의 공제방법을 알려주세요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기납부 소득세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배당세액 및 기납부세액 공제

#### 1) 배당세액공제

##### 가)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sup>16)</sup>

- ①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
- ②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합산
- ③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합산(소득법§17③단서)

##### 나) 배당세액공제 방법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배당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text{배당세액공제액} = \text{MIN}(\text{①}, \text{②})$$

- |   |          |   |                           |   |                                       |
|---|----------|---|---------------------------|---|---------------------------------------|
| ① | 배당가산액    | = | 배당소득×11/100               |   |                                       |
| ② | 종합소득산출세액 | - | 금융소득 이외의<br>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융소득의<br>산출세액(분리과세시 산출세액) |



16) 소득령 §116의2

## 2) 기납부세액의 공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해당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전체 금융소득(기준금액 2천만 원 포함)에 대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전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참고

###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사례

#### 사실관계

##### (1) 2023귀속 종합소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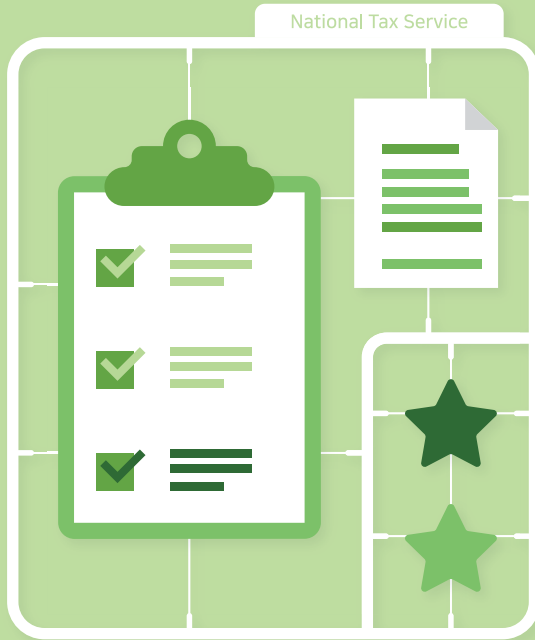
- ① 은행예금 이자 : 20,000,000원
- ② 비영업대금이익 : 10,000,000원
- ③ 비상장법인 배당 : 30,000,000원
- ④ 사업소득금액 : 50,000,000원

#####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으로 가정

####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계산

- ▶ 금융소득 = ① + ② + ③ = 60,000,000원
- ▶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 60,000,000 - 20,000,000 = 40,000,000원  
\* 기준금액 초과금액은 이자, G-up제외 배당, G-up대상 배당 순으로 적용
- ▶ 배당가산(Gross-up)대상 금액 : 30,000,000원
- ▶ 배당가산액 : 30,000,000 × 11% = 3,300,000원
- ▶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 중 큰 금액) : 18,770,000원
  - ㉠ 종합과세방식 :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과세기준금액 × 원천징수세율) = 산출세액  
[(40,000,000 + 3,300,000 + 50,000,000 - 5,100,000) × 35% - 14,900,000] + (20,000,000 × 14%) = 18,770,000원
  - ㉡ 분리과세방식 :  
[(50,000,000 - 5,100,000) × 15% - 1,080,000] + [10,000,000 × 25% + 50,000,000 × 14%] = 15,155,000원
- ▶ 배당세액공제(㉢, ㉣ 중 적은 금액) : 3,300,000원
  - ㉢ 배당가산액 : 30,000,000 × 11% = 3,300,000원
  - ㉣ 위 종합소득 산출세액(18,770,000원) - 위 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15,155,000원) = 3,615,000원

National Tax Service





## 제6장

# 주식의 평가

## 66 | 주식평가는 왜 하는 건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환가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하게 되므로 재산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산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과세행정의 획일성·신속성을 위하여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상증법, 동법 시행령, 기본통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67 | 평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가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재산가액의 가변성에 비추어 어느 시점에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증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당시의 재산가액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평가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재산평가의 기준일

#### 1) 상속재산

##### 가) 상속개시일(사망일)

일반적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사망일이 평가기준일이 됩니다.

##### 나) 실종선고일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민법 제28조에서는 실종선고일자에 불구하고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 규정에 따라 실종기간 만료시를 상속세 납세의무성립일로 정하면, 상속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속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실종선고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증법 제2조 제2호에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고 있으므로 실종선고일이 평가기준일이 됩니다.

## 2) 증여재산

### 가) 민법상 증여

증여계약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주권인도일이 되며, 주권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명의개서하는 경우 해당 명의개서일이 됩니다.

### 나) 상증법상 증여예시·의제에 해당하는 증여

증여예시 및 의제 유형별로 증여 시기(평가기준일)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 상증법상 증여예시·의제의 증여 시기(평가기준일)

- ▶ **신탁이익** : 지급약정일, 수회 분할지급시는 최초분할 지급일 등
- ▶ **보험금** : 보험사고 발생일(만기 지급의 경우 만기일)
- ▶ **저가·고가양도** : 대금 청산일(불분명 또는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예외 매매계약일
- ▶ **채무면제** :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인수 또는 변제할 때
- ▶ **부동산무상사용** : 무상사용 개시일, 계속 무상사용시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 **합병시 증여** : 주권상장법인은 대차대조표 공시일과 합병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중 빠른 날, 비상장법인은 대차대조표 공시일
- ▶ **증자시 증여** : 주권납입일(주권 납입 전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증자 전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는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 ▶ **감자시 증여** :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 ▶ **현물출자시 증여** : 현물출자 납입일
- ▶ **전환사채등의 증여** : 거래단계별로 인수·취득일, 양도일 및 주식 전환일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유형, 즉 재산의 증여, 무상제공, 채무면제·인수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 유형별로 판단
-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
- ▶ **주식 등 상장이익의 증여** :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금전무상대출시 증여** : 금전을 대출받은 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새로운 대출일로 봄

- ▶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 : 합병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때(등기접수일)
-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취득자금 소명대상 재산을 취득한 때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등기·등록·명의개서일
-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수혜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사업기회 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 다) 합산되는 증여재산(재차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그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데, 이 경우 가산되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sup>17)</sup>

따라서 당해 증여가 있는 시점에서 과거의 증여재산을 재차증여가 있는 시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증여가 있었던 때에 이미 평가되었던 증여가액을 단순히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68 | 주식평가 방법을 알려주세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61~§65)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평가방법 개요

##### 1) 원칙 : 시가평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가보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높은 경우에도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 2) 예외 : 보충적 평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61~§65)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 가) 의의 및 필요성

특정재산의 시가는 항상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 재산과 관련된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가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한 시점에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특정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증령 §50 내지 §6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바, 이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합니다.

#### 나) 적용요건과 입증책임

상속 및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증법 §61 내지 §65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다) 재산종류별 평가원칙 및 재산평가시 계산단위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재산을 평가단위별로 개별평가하여 그 평가액의 합계액을 재산 평가액으로 하며, 배울에 의한 부동산의 제곱미터당 가액, 상장주식의 1주당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1주당 순손익액 및 이의 가중평균액 등의 계산에 있어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이를 버리고 계산합니다.<sup>18)</sup>

18) 상증통 60-0-1



참고

### 각 세법상 주식평가방법 비교

구분	상증법	소득법	법인세법
① 평가원칙	<p>▶ <b>(시가)</b>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 되는 가액</p> <p>- 상속개시 전후 6월내 (증여 재산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 매매 가액, 수용 보상가액 등은 시가에 포함</p> <p>※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 기간 후 법정결정 기한까지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지방청)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 할 수 있음</p>	<p>▶ <b>(실거래가액)</b> 실거래 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 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결정·경정</p> <p>※ 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 적용 제외</p> <p>※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는 상증법상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 으로 봄 (소득령§167⑤)</p>	<p>▶ <b>(시가)</b>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자율 등</p> <p>※ "직전 6개월(증여세의 경우 3개월)"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봄(법령§89②2)</p>
②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 코넥스 상장주식	<p>▶ <b>(시가)</b>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p> <p>※ 코넥스 상장주식은 비상장 주식평가방법에 따른</p>	<p>▶ <b>(시가)</b> 법인세법상 시가 (소득령§167⑦)</p> <p>▶ <b>(기준시가)</b> 양도·취득일 이전 1월간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소득법§99①3)</p>	<p>▶ <b>(시가)</b> 실지거래가액</p> <p>▶ <b>(예외)</b>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 하거나 장외거래한 경우 거래일 현재 최종 시세가액 (법인령§89①)</p>

구분	상증법	소득법	법인세법
③ 비상장 주식	<p>▶ <b>(원칙)</b> 매매등 시가</p> <p>▶ <b>(보충적평가)</b></p> <p>- 원칙 : Max (가중평균액, 순자산 가치 × 80%)</p> <p>- <b>가중평균액</b> : <math>\{(\text{㉠} \times 3) + (\text{㉡} \times 2)\} \div 5</math></p> <p>※ 부동산 과다법인 <math>\{(\text{㉠} \times 2) + (\text{㉡} \times 3)\} \div 5</math></p> <p>㉠ 1주당 순순익가치 : 최근 3년간 1주당 순순익액의 가중 평균액 ÷ 10%</p> <p>㉡ 1주당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수</p> <p>- <b>예외</b>: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 (상증령§54④)</p> <p>▶ <b>평가기준일</b>: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 기준일 현재로 가결산)</p>	<p>▶ <b>(원칙)</b> 매매등 시가</p> <p>▶ <b>(기준시가)</b></p> <p>- 원칙 : Max (가중평균액, 순자산 가치×80%)</p> <p>- <b>가중평균액</b> : <math>\{(\text{㉠} \times 3) + (\text{㉡} \times 2)\} \div 5</math></p> <p>※ 부동산과다법인 <math>\{(\text{㉠} \times 2) + (\text{㉡} \times 3)\} \div 5</math></p> <p>㉠ 1주당 순순익가치 :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순익액 ÷10%</p> <p>㉡ 1주당순자산가치 : 직전연도 종료일 장부가액÷발행 주식수</p> <p>- <b>예외</b>: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 (소득령§165④3호)</p> <p>▶ <b>평가기준일</b>: 양도·취득 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p>	<p>▶ <b>(시가)</b> 매매 등 시가</p> <p>▶ <b>(보충적평가)</b> 상증법 준용 (법인령§89②)</p> <p>- <b>예외</b>: 상증법 준용 (상증령§54④와 동일)</p> <p>▶ <b>평가기준일</b>: 거래일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p>
④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특례	<p>▶ <b>원칙</b>: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은 20% 할증</p> <p>▶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은 제외 (소득법§167⑤, 법인령§89①, 상증법§63③)</p>		

## 69 | 주식평가 시 시가란 무엇인가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각자 최선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성립될 때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법령 취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시가

##### 1) 시가의 정의

대법원 판례<sup>19)</sup>에 따르면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각자 최선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성립될 때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평가가액 또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세가액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시가는 상증법, 법인법, 소득법 등에서 법령 취지에 따라 각각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상증법을 기준으로 시가 등 평가방법을 살펴보고 필요 시 다른 법령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 2) 상장주식의 시가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가 됩니다. 상증법 상 코넥스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평가방법을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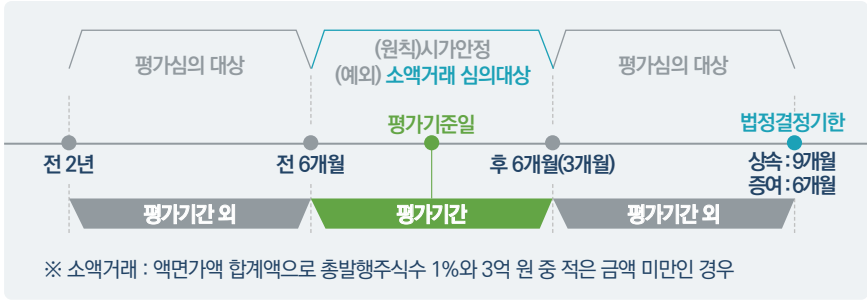
##### 3) 비상장주식의 시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1) 시가의 정의와 같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상속개시 전후 6개월

19) 대법원 2006두17055(2007.1.11. 선고), 2000두5098(2000.8.21. 선고) 등.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수용·보상가액 등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지방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상증령§49)

- ▶ (제1항 제1호 가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1항 제1호 나목)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 ①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② 3억 원
- ▶ (제1항 제2호) 주식 감정가액
- ▶ (제1항 제3호 가목)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 (제1항 제3호 나목)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①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② 3억 원
- ▶ (제1항 제3호 다목) 경매 또는 공매 개시 후 법령에 따라 수익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 (제1항 제3호 라목)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 70 | 시가가 없는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가 빈번하지 않음에 따라 평가기간 내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가격인 시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목적에 부합하고 과세원칙인 예측가능성과 법적인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sup>20)</sup>하고 있습니다.



참고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요약

- ▶ (원칙) 매매 등 시가평가
  - 불특정 다수인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 6개월 부터 후 6개월 (증여의 경우 후 3개월) 이내의 매매·경매·공매가액(주식은 감정가액 시가 제외)

구분	시가인정 여부
평가기간 내	▶ 시가 인정(소액거래*인 경우 평가심의 후 시가 인정) *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① 발행주식총액의 1% 또는 ②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
평가기간 외	▶ 평가심의 후 시가 인정(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평가기간 후 법정신고결정기한까지)

- ▶ (예외)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20) 상증법 제6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 71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함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세법에서 정한 가치평가 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평가대상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재산정한 순자산가치와, 평가대상법인의 영업활동에 따른 과거의 수익력을 기초로 계산한 순순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순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평가대상 법인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순익 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를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가중평균 방식을 적용할 경우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하한선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은 평가되도록 한 것입니다.

#### 1) 주당 순순익가치

수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자산을 미래의 수익창출에 계속 사용할 경우에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으로 예측 가능한 기간 동안의 미래수익을 추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이 때 미래의 수익력을 예상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평가의 객관화를 위하여 현행 상증법에서는 과거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순익액의 가중평균 금액을 순순익가치환원율(10%)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이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대하여 각각 가중치를 3, 2, 1을 부여하여 평균하는데 가중평균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하므로(상증령§56①) 1주당 순손익가치는 0원으로 산출됩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1주당 순손익가치 =  $\frac{\text{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text{순손익가치환원율(10\%, 상증칙§17)}}$

\* 1주당 순손익액 =  $\frac{\text{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text{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 2) 주당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이 청산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잔여재산의 분배가액을 의미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에게 귀속되는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평가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

1주당 순자산가치 =  $\frac{\text{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text{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 순자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영업권 평가액

## 3) 주당 평가액의 계산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3과 2로 가중평균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2와 3으로 가중평균합니다. 이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나 1주당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경우에는 각각 0원으로 하고, 가중치 합계는 5로 하여 평가하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음수(-)인 경우 평가액은 0원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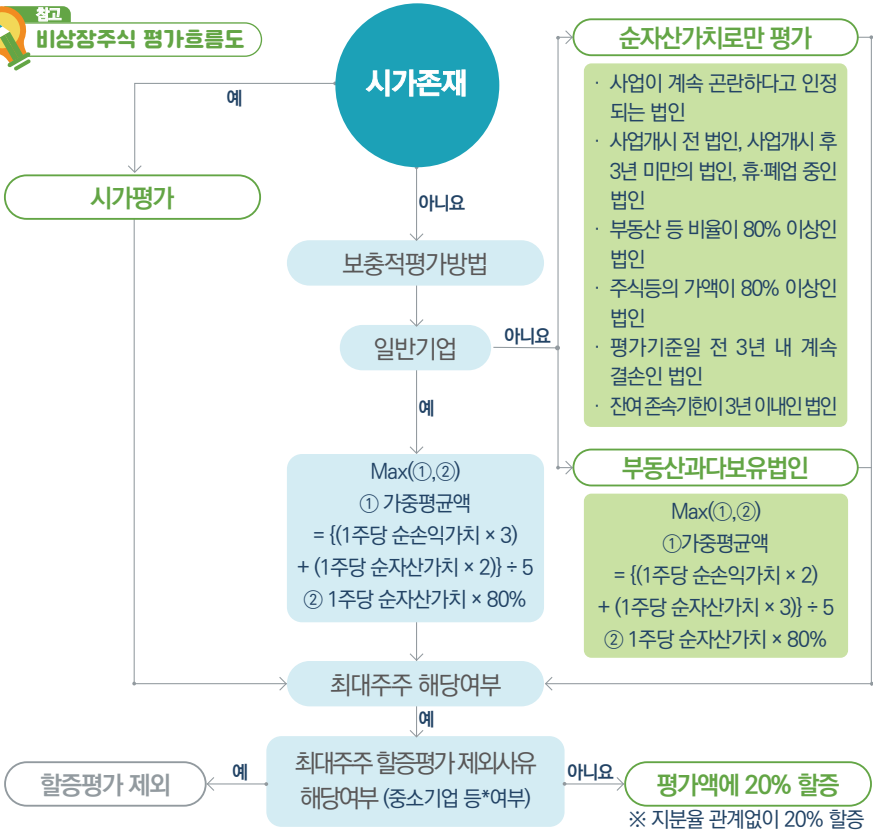
**참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요약

구분	계산방법	
1주당 평가액	일반법인	<b>Max</b> ①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② 순자산가치 × 80%
	부동산과다 보유법인*	<b>Max</b> ① (순손익가치 × 2 + 순자산가치 × 3) ÷ 5 ② 순자산가치 × 80%
	폐업법인 등	1주당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 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0%, 순손익가치 환원율)	
순자산가치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보유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법인(소득법§94①4호다목 해당법인)



**참고**  
비상장주식 평가흐름도



\* 중견기업 중 직전 3년 평균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주식 포함(23.1. 1. 이후 상속·증여분)

## 72 |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등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법§94①4다목)이라고 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대상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순익가치에 대하여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증령§54①)

다만, 부동산비율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순순익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구분	평가방법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 80% 미만	순순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으로 가중평균하여 평가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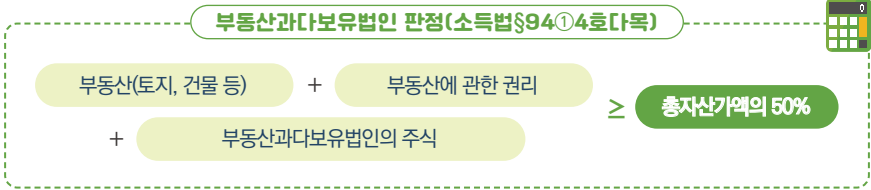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 1)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건물에 부착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전세권·지상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가액과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의 비율(이하 '부동산등 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sup>21)</sup>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정은 부동산등 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판정하며, 자산가액은 소득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평가대상 법인의 장부가액(토지, 건물의 경우 기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부동산등 가액의 계산**

구분	계산방법
부동산등 가액 비율 = 부동산등(①+②+③) / 총자산가액(④-⑤)	
부동산등 가액 (①+②+③)	
①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건물, 구축물(건설중인자산 제외)</li> <li>※ 준공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이 평가기준일 이전인 경우 부동산가액에 포함</li> </ul>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자산가액</li> </ul>
③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li> </ul> <div style="margin-left: 20px;"> <math display="block">\text{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times \frac{\text{①, ②의 부동산등의 가액} + (\text{다른 법인이 경영지배하는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text{다른 법인의 자산총액}}</math> </div>
총자산가액 (④-⑤)	
④ 자산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li> </ul>
⑤ 제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에서 제외하는 항목의 가액의 합계</li> <li>1) 무형자산 중 개발비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li> <li>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대여금 및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li> </ul>

\* '20. 7. 1. 이후 평가분부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에 대한 부동산 등 비율 판정시 간접 보유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이 경영 지배하는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상당액도 포함하여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판정하는 것으로 개정(소득령 §158⑦)

21) 소득법 §94①4호다목, 소득령 §158①-⑦

## 2) 부동산등가액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판정하기 위한 부동산가액이란 다음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 가)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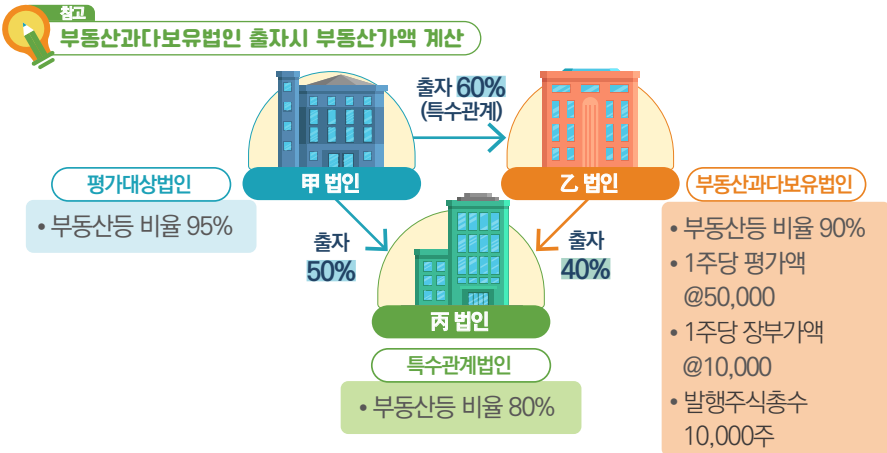
토지·건물·건축물 등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건설가계정은 제외한다. 부동산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건축물을 의미하며,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결산서상 건축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같은 권리

### 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다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에 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평가대상법인의 부동산가액에 포함한다. 이 경우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이라 함은 자산총액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된 세무상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Q 甲법인 주식 평가시 부동산등 비율에 반영되는 乙법인의 주식 가격은?

#### ▶ 풀이

- ① 2020. 7. 1. 이후(직·간접 출자 포함)  
= 乙법인의 주식가액 × [(乙법인 부동산가액 + (丙법인 주식가액 × 丙법인 부동산등 비율)) / 乙법인 자산총액]
- ② 2020. 6. 30. 이전(직접 출자만 포함) = 乙법인의 주식가액 × 부동산등 비율 90%

### 3) 총자산가액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소득령§158④), 이때 장부가액이란 재무상태표상 계상한 장부가액에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산입한 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은 당해 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부동산등 비율 산정시 평가기준일 직전에 차입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 비율을 낮추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산은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령§158④).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개발비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대여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의 합계액

#### 참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2호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 73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1주당 순순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 또는 2:3으로 가중평균한 것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가대상법인이 일반적인 경영상태에 있지 않거나 영위 사업이 성숙되지 않아 수익력을 고려할 수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로만 주시가치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수익가치에 의한 평가는 정상적인 수익활동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다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 ① 상속·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②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 ③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등 관련 주식 포함)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④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
- 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계속 결손인 법인('18. 2. 13. 이후 평가분부터 삭제)
- ⑥ 평가기준일 현재 정관으로 정한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 나. 순자산가치 평가시 영업권 평가액의 가산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1주당 순자산가치의 평가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때 가산하는 영업권 평가액은 법인의 초과수익력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업권은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증법에 따라 계산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상증령§55 ③각호)

- ① 상속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 ②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③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가산함)
  - ※ 다만, 개인사업자가 상증령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특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함 (영업권 평가액 가산)
- ④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 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참고

### 영업권 평가액의 계산

	평가대상법인의 평균순손익액	최근 3년간 가중평균순손익액의 50%
—	정상이익 금액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10%
=	초과이익 금액	초과이익이 5년간 지속된다고 가정
×	연금현재가치 계수	5년, 10% 연금현재가치계수(3.7908)
=	영업권 평가액	순자산가액에 가산할 금액



## 74 | 특수한 경우의 주식평가 방법도 알려주세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적게 보유하거나 또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로 소유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을 10% 이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이동평균법)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상증령§54③)

#### 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가중평균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상증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 2023. 04.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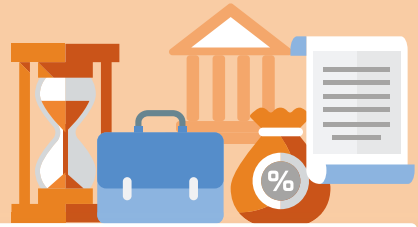
$$1\text{주당 순자산가치} = \frac{\text{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 (\text{자기주식수} \times 1\text{주당 순자산가치} \times 80\%)}{\text{총 발행주식수}}$$

**참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연도별 요약**

구분	'04. 1. 1. 이후	'05. 1. 1. 이후	'17. 4. 1. 이후	'18. 4. 1. 이후
평가원칙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3:2로 적용	좌 동	(좌동) 단, 가중평균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70% 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70% 적용	(좌동) 단, 가중평균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 적용
최근 3년간 계속 결손 법인	-	순자산가치로평가 (의무규정)	좌 동	'18. 2. 13. 이후 평가분부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규정 삭제, 일반 원칙 적용
사업개시 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휴·폐업법인				좌 동
청산절차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계속이 곤란한 법인	순자산가치로평가 (선택규정)	순자산가치로평가 (의무규정)	좌 동	좌 동
부동산등 보유비율 50% 이상인 법인 (단, 80% 이상인 경우 '12. 2. 2. 부터 순자산가치로 평가(의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2:3으로 적용	좌 동	좌 동	좌 동
주식등 보유비율 80% 이상인 법인 및 잔여 존속기한 3년 이내인 법인 ('17. 2. 7. 이후)	-	-	순자산가치로평가 (의무규정)	좌 동
기업공개 전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한 법인의 주식	①, ② 중 큰 가액 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등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등의 가액 (그 가액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 2003. 1. 1. 이후 - 지분율 50% 초과 : 30%(중소기업 15%) - 지분율 50% 이하 : 20%(중소기업 10%) ▶ 2005. 1. 1. 이후 - 할증률 동일하나 중소기업주식 상속 증여 시 할증평가 배제 (조특법§101) ▶ 2020. 1. 1. 이후 - 비중소기업 20% ▶ 2023. 1. 1. 이후 - 비중소기업 및 비중견기업 20%			

National Tax Service





## 제7장

# 주식 관련 조세특례



## 75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뭔가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부터 도입된 특례 금융상품(계좌)입니다.

ISA는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해당 1계좌를 통해 여러개의 다양한 예금·적금·예탁금, 채권, 상장주식, 펀드 및 추가연계증권(ELS)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국내거주자로서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이며,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이하 계좌 개설 이후 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하여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소 3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적용됩니다.

계좌유형이 ① 농어민형 ② 서민형 ③ 일반형으로 구분되는데, 농어민형·서민형은 400만 원, 일반형은 20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 발생시 저율(9.9%,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요

##### 1)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국내 거주자

##### 2) 가입자격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 3) 납입한도

연간 2천만 원. 다만 계좌개설 이후 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하며,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

### 4) 의무가입기간

가입 후 최소 3년. 다만, 만기일 전에 계약기간 연장이나 재가입 허용

### 5) 계좌의 유형 및 비과세 한도

#### 가) 농어민형

- (1) **자격**: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인 경우
- (2) **비과세한도**: 4백만 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저율 (9.9%,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나) 서민형

- (1) **자격**: 근로소득 5천만 원이거나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인 경우
- (2) **비과세한도**: 4백만 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저율 (9.9%,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다) 일반형

- (1) **자격**: 농어민형, 서민형 외 모든 경우
- (2) **비과세한도**: 2백만 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저율 (9.9%,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참고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요

유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가입요건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 19세 미만 거주자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거주자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비과세한도	2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비과세한도 초과시 과세방법	9.9%(지방소득세 포함) 저율 분리과세		
의무가입기간	3년		
납입한도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 원 (해당연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중도인출	총 납입원금 내에서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 복원 안됨)		
가입시 필요서류	(만15세 ~ 19세 미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농·어·업인확인서 등

##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투자방식

### 1) 중개형(직접투자)

: 국내 상장주식 위주의 투자시 선택합니다.

### 2) 신탁형(간접투자)

: 예·적금 위주의 투자시 선택합니다.

### 3) 일임형(금융시위탁)

: 전문가에게 투자를 일임할 때 선택합니다.



#### 참고 ISA 종류별 금융상품



#### 참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투자방식 비교

유형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투자가능 상품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형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사채, ETN, RP	예·적금, 펀드, ETF,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사채, ETN, RP	펀드, ETF 등
투자방법	고객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		증권사 투자전문가의 포트폴리오로 일임운용
보수 및 수수료	투자상품별 수수료 및 보수	신탁보수: 연 0.2% (연 1회 후취)	상품유형별 상이 대체로 분기 후취
모바일 비대면 계좌 개설	일반형 가능	불가	불가

##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장점과 유의할 점

### 1) 장점

#### 가) 계좌 내 투자수익에 대한 절세효과

ISA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 원 까지 비과세되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저율(9.9%,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합니다.

#### 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납입 한도 최대 900만 원, 공제율 12~15%)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 손익 및 기간의 통산

##### (1) 손익의 통산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각각 계좌별로 그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고 다른 계좌와 통산되지 않으나 ISA는 해당 계좌에 속한 모든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고 다른 과세대상 금융상품의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대상소득을 산출합니다.

이 경우 주식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으나, 비과세 되는 경우 및 대주주의 양도차손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 (2) 기간의 통산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각각의 수입시기별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수입시기도 1년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ISA는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므로 각각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득의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여러개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득의 수입시기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 2) 유의사항

### 가) 의무가입기간(최소 3년) 충족 필요

비과세 등 세금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최소 3년간 계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 나) 국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

국외 시장에 상장된 ETF 등의 투자는 가능하지만, 국외 개별 주식은 투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76 |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세금혜택은 없나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포함)한 일정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교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조금 더 알아보기

#### 가. 벤처기업 출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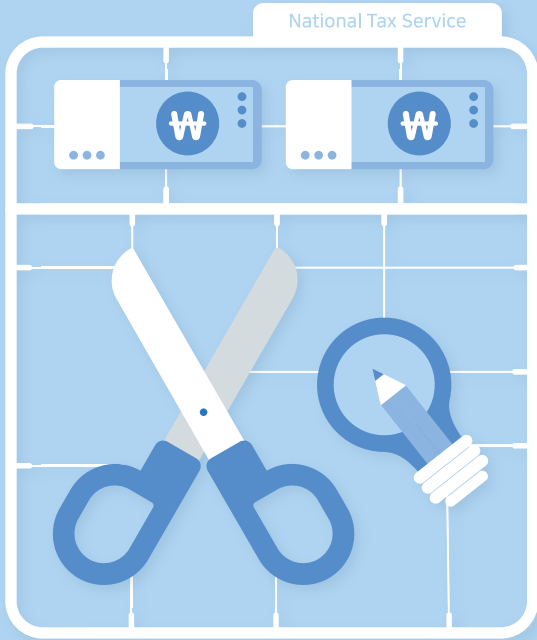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일정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교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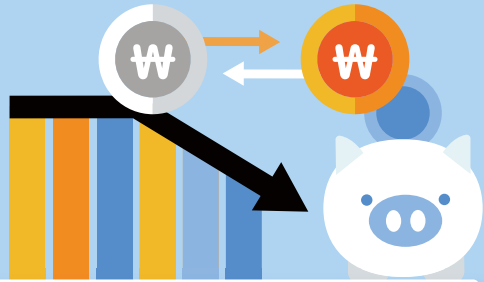
##### 1) 비교세 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합니다.

- 가)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인 최초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봄
- 나)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이거나 개인투자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National Tax Service





제8장

절세  
꿀팁 모음



# 1.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 1

## 손실 활용(실현)하기

주식등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부터 12.31.까지)동안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합니다.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해 실현한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등의 손실과는 상계할 수 없음에 유의



### 양도소득세 세부담 계산사례



국외 A상장주식 양도차익 1억 원

김국세씨는 '23년에 국외 A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1억 원 발생.  
국내 B상장주식(대주주 해당)의 경우 '23. 12. 25. 현재 평가손실 1억 원 발생.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국내 B상장주식 평가손실 1억 원

### 1 국내주식 손실을 마실현한 경우 양도소득세 : 19,500,000원

$$\gg \{ \text{국외주식 양도차익 } 100,000,000\text{원} - 2,500,000\text{원} \} \times 20\% = 19,500,000\text{원}$$

### 2 국내주식 손실을 실현한 경우('23. 12. 25. 국내 B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 0원\*

$$\gg \text{국외주식과 국내주식 양도손익 통산 } \textcircled{1} \pm \textcircled{2} = 0\text{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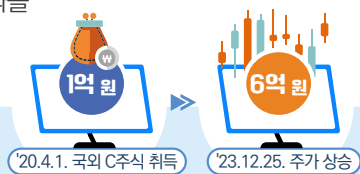
① 국외주식 양도차익 100,000,000원

② 국내주식 양도차손 △100,000,000원

\* 국내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및 증권사 거래수수료 등 일부 발생 미고려

#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성년인 자녀 5천만 원 등)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 시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김국세씨가 '20. 4. 1. 1억 원에 취득한 국외 C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여 '23. 12. 25. 현재 주가가 6억 원으로 5억 원의 평가이익 발생.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으며,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 1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 : 99,500,000원

$$\gg \{ (600,000,000\text{원} - 100,000,000\text{원}) - 2,500,000\text{원} \} \times 20\% = 99,500,000\text{원}$$

## 2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가 양도 시 양도소득세 : 0원

※ 사례는 배우자에게 실질 증여한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실질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 ② = 0원

① 증여세  
 $600,000,000\text{원}(\text{증여재산가액}) - 600,000,000\text{원}*(\text{증여재산공제}) = 0\text{원}$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 6억 원

② 양도세  
 $600,000,000\text{원}(\text{양도가액}) - 600,000,000\text{원}*(\text{취득가액}) = 0\text{원}$   
 \* 증여받은 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수증시 증여재산가액임

#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하기

몇 년 동안 쌓인 주식등 양도차익을 한번에 실현하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매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김국세씨는 '23. 4. 1. 미국 A상장주식 1,000주를 10,000원에 취득.  
'23. 12. 25. 현재 A상장주식은 주당 15,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김국세씨는 주식 양도를 계획중임.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 1 전부양도 '23. 12. 25. 주당 15,000원에 전부 양도 시 양도소득세 : 500,000원

$$\begin{aligned} & \gg \{ (15,000,000\text{원} - 10,000,000\text{원}) - 2,500,000\text{원} \} \times 20\% \\ & = 500,000\text{원} \end{aligned}$$

## 2 분할양도 '23. 12. 25. 50%, '24. 1. 1. 50%를 주당 15,000원에 분할 양도 시 양도소득세 : 0원

$$\gg \textcircled{1} \pm \textcircled{2} = 0\text{원}$$

① '23. 12. 25. 양도분

$$\{ (7,500,000\text{원} - 5,000,000\text{원}) - 2,500,000\text{원} \} \times 20\% = 0\text{원}$$

② '24.1.1. 양도분

$$\{ (7,500,000\text{원} - 5,000,000\text{원}) - 2,500,000\text{원} \} \times 20\% = 0\text{원}$$



## 2. 주식 증여세 절세

### 꿀팁 4

## '상장주식 증여' vs '주식취득자금 증여'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르며, 상장주식의 시가는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의 증여 시점에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등 증여 후 시가 즉 증여재산가액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과소 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금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가 즉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어려운 주식 증여보다 주식 취득자금(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세금측면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꿀팁 5

##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를 고려하세요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하는 주식의 시가 즉,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주식의 시가는 수시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도 변경되므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기를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증여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주가가 떨어졌다고 실망하시지 말고 주식 증여를 위한 좋은 기회로 생각하세요.



## 비상장주식 거래 시 유의사항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체로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고·저가 거래 또는 특수관계인간 증여 시 여러 가지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세금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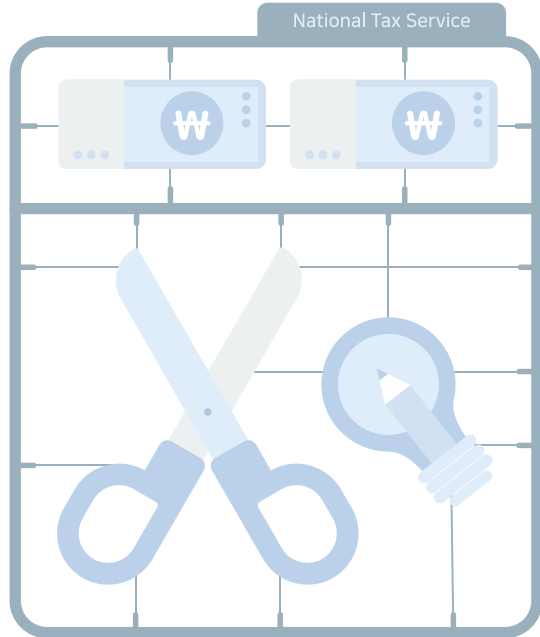
### 3. 기다질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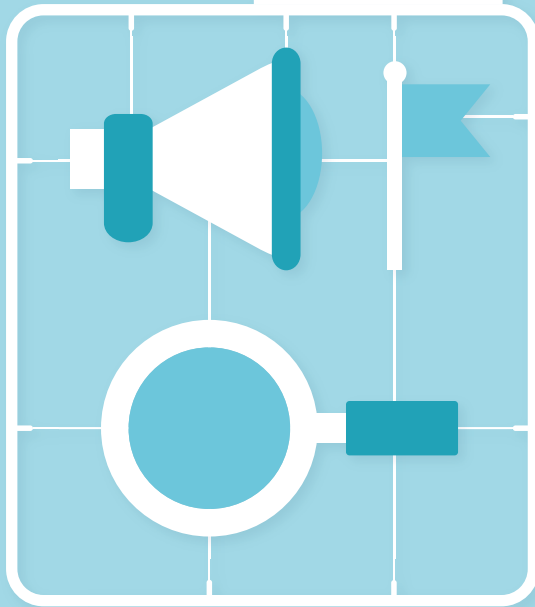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200만 원(서민형, 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소득도 저율(9.9%, 지방소득세포함)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그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상세한 내용은 주식관련 조세특례 참고(책자 169P)



National Tax Service





## 제9장

# 자주 실수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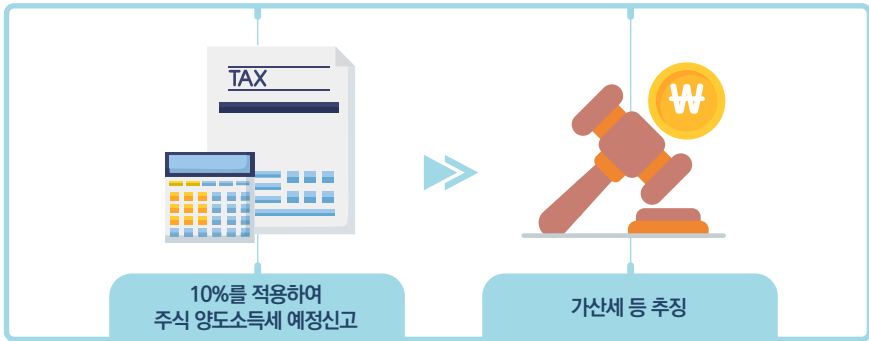


## 1. 세율 적용



### 사례 1.

##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실수사례

△△씨는 본인이 소액투자를 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



#### 세법 설명

비상장주식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으로 구분됨.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 세율,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의 경우 20% 세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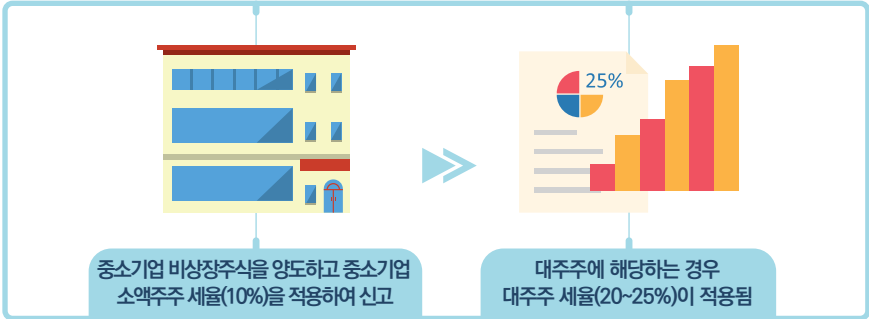


#### 한번 더 확인

신고 시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후 세율을 적용

## 사례 2.

#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실수사례

△△씨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중소기업-소액주주 세율(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주주 세율(20%, 3억 원 초과 25%)이 적용됨에 따라 가산세 4천만 원을 포함, 양도소득세 2억 8천만 원 추가납부

### 세법 설명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주자인 경우 10% 세율이 아닌 20 ~ 25%의 누진세율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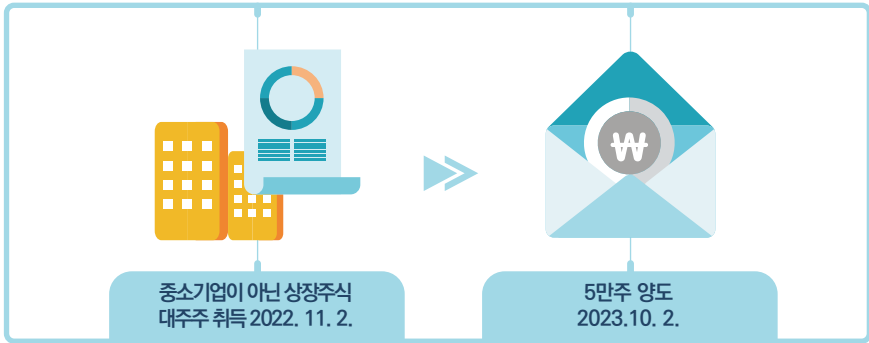
### 한번 더 확인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므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사례 3.

#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실수사례

○○씨는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주식 A의 대주주로 2022년 11월 2일에 취득한 A주식을 2023년 10월 2일에 5만주 양도하고 세율 2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



세법  
설명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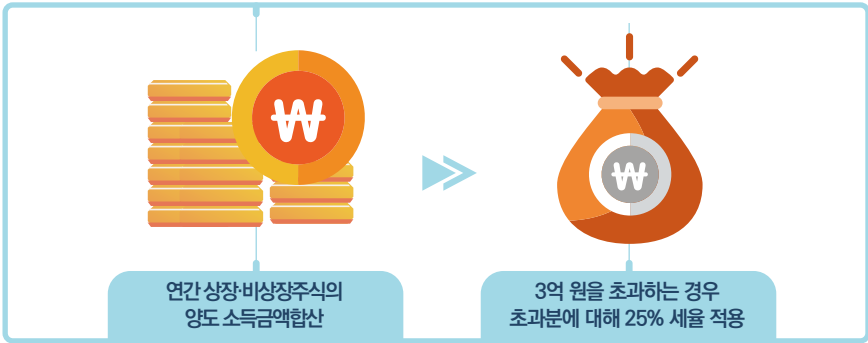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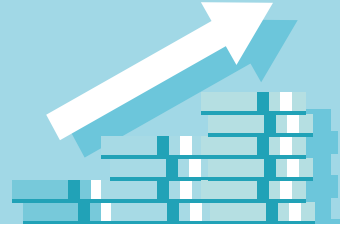


한번  
더  
확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는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양도시기를 확인

## 사례 4.

#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5%)을 적용하여야 하나 세율 적용을 잘못된 사례



### 실수사례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상장·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신고하여 가산세 등 추징

#### 세법 설명



'23년 상반기 예정신고 시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5억 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23년 하반기 예정신고 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간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 한번 더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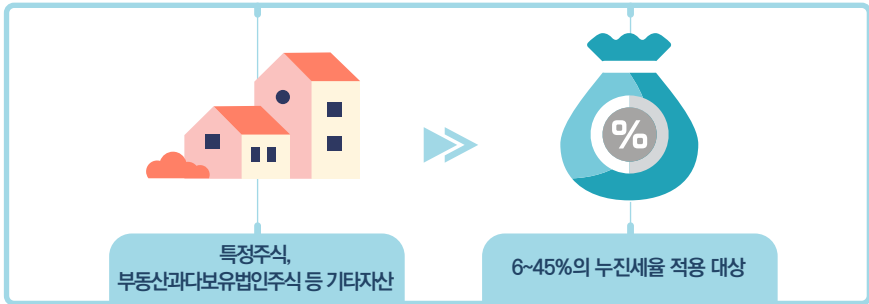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연간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신고 및 누진세율 적용 확인**



## 사례 5.

# 특정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 미적용 사례



## 실수사례

○○씨는 일반 누진세율(6~45%) 적용대상 특정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일반주식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8억 원 포함, 양도소득세 47억 원 추가납부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



세법  
설명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6~45%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한번  
더  
확인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 여부를 사전에 확인

## 사례 6.

# 신주인수권 단기 양도 후 단기 양도세율(30%) 미적용 사례



## 실수사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취득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 후 일반 세율(20%)을 적용하여 신고



세법  
설명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의 경우 **주식등(신주인수권 포함)**을 취득 후 **단기(1년 미만 보유)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 적용**



한번  
더  
확인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짧아 **단기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



## 2. 대주주 판단



### 이혼한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사례



#### 실수사례

△△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혼인 상태였으나 주식등의 양도시점에는 이혼함에 따라,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미이행



최대주주 판정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 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확인

## 사례 8.

#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새로 매수한 주식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 실수사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새로 매수한 주식이라는 이유로 무신고

### 세법 설명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해당

### 한번 더 확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

사례 9.

#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하여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실수사례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을 직전 사업연도 말일 주식 체결일을 기준으로 잘못 판단



세법  
설명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



한번  
더  
확인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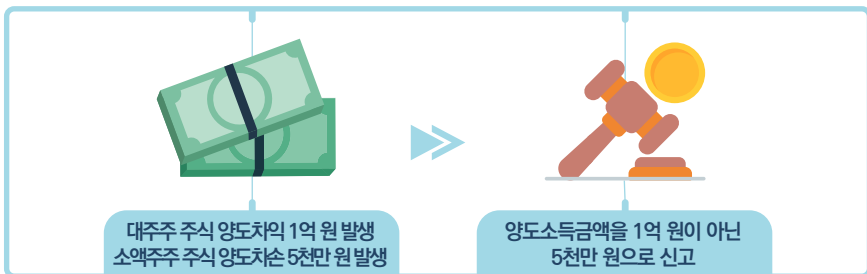


### 3. 손익 통산



#### 사례 10.

##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 실수사례

□□씨는 A상장주식의 대주주로 해당 주식을 장내 매도하여 차익이 1억 원 발생하였고, 같은기간 B상장주식(□□씨는 소액주주 해당)을 장내 매도하여 5천만 원 손실이 발생. 예정신고 시 A주식과 B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5천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



세법  
설명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통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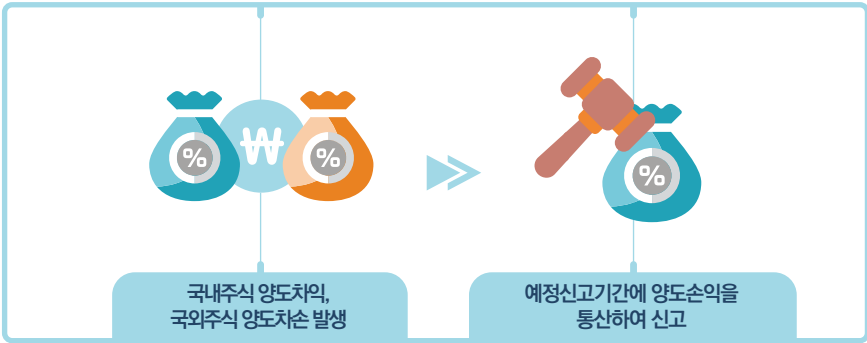


한번  
더  
확인

① 장내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②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도 불가

사례 11.

# 예정신고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한 사례



실수사례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등은 제외)을 '23년 상반기에 양도,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국외주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자 예정신고기간(8월)에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잘못 신고함에 따라 가산세 등 추징



세법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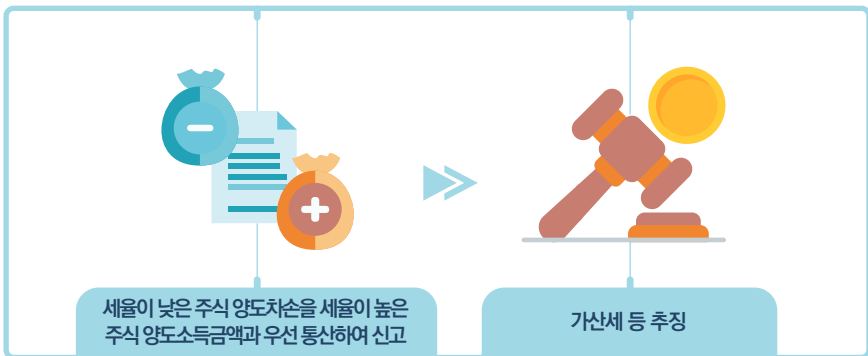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 시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국내주식 양도차손과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임**



한번  
더  
확인

국외주식의 경우 **확정신고 의무만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

## 손익통산 순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



### 실수사례

세율이 낮은 주식 양도차손을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하여 신고함에 따라 가산세 등 추징



세법  
설명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 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차손을 세율이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손익을 통산



한번  
더  
확인

세율이 다른 양도손익이 있는 경우 **손익통산의 순서**를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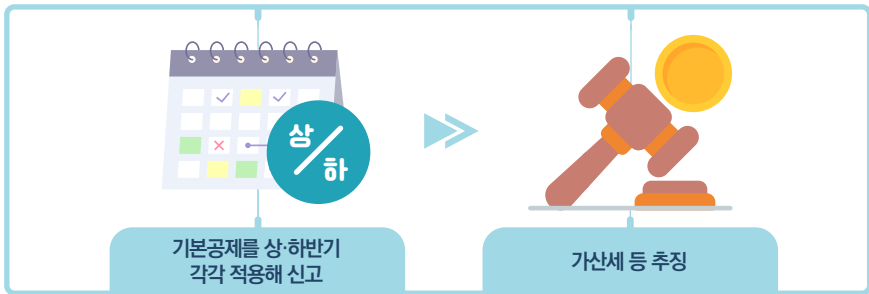




## 4. 기본 공제



### 기본공제를 매 예정신고마다 중복 적용한 사례



#### 실수사례

○○씨는 '23. 1. 주식 매도건에 대하여 '23. 8. 예정신고 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여 신고한 후, '23. 9. 매도건에 대하여 '24.2. 예정신고 시에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



세법  
설명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 이므로 예정신고별로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할 수 없음



한번  
더  
확인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각 주식을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 한도로만 적용**되는 점에 유의

사례 14.

## 상장주식 장외 거래분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 실수사례

○○은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후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주식등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가산세 9백만 원을 포함, 양도소득세 4천만 원 추가납부



세법  
설명

장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



한번  
더  
확인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장내, 장외 양도 여부**를 **사전에 확인**

# 2024 한권으로 OK 주식과 세금

발행일자 2024년 5월

발행처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감수 자본거래관리과장 정희진

집필총괄 행정사무관 이원주

집필/편집 행정사무관 정은지

행정사무관 장경화

행정사무관 김은진

국세조사관 이정아

국세조사관 이계호

국세조사관 서지민

국세조사관 이두원

국세조사관 정주연

국세조사관 진수정

2024 한권으로 OK  
주식과 세금



국세청 세금안내책자  
자료실 바로가기